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NABO Fiscal Estimates&Tax Issues

CONTENTS

- 재정추계&세제 동향 |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한국과 주요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동향 및 제도 비교
외국인정책 관련 제21대 국회 입법 동향 및 추계 사례
유럽연합의 연금·보건·장기요양·교육 분야 장기재정전망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 소비세제·재산세제
- 재정추계&세제 이슈 |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21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분석 및 시사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추계



Contents

재정운용 실적	3
2024년 1분기 총수입 실적	4
2024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현황	9
재정추계&세제 국내 동향	15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6
한국과 주요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동향 및 제도 비교	28
외국인정책 관련 제21대 국회 입법 동향 및 추계 사례	40
재정추계&세제 해외 동향	47
유럽연합의 연금·보건·장기요양·교육 분야 장기재정전망 : EC가 발간한 「2024 Ageing Report」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48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소비세제·재산세제	63
재정추계&세제 이슈 및 분석	75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76
제21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87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분석 및 시사점	99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추계	109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121

재정운용 실적

2024년 1분기 총수입 실적
2024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현황



2024년 1분기 총수입 실적

김효진 ·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4, 4652)

1. 총수입¹⁾

2024년 1분기 총수입은 147.5조원으로 전년동기(145.4조원) 대비 2.1조원(1.4%)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24.1%로 전년동기(결산기준) 대비 1.2%p 감소

- (국세수입) 2024년 1분기 국세수입은 84.9조원으로 전년동기(87.1조원) 대비 2.2조원(2.5%) 감소
 - 국세수입 감소는 주요 기간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조, 5.5조원 감소한 점에 주로 기인
 - 2024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전년동기(결산기준) 25.3% 대비 2.2%p 낮은 수준
- (국세외수입) 2024년 1분기 국세외수입은 62.6조원으로 전년동기(58.3조원) 대비 4.3조원(7.4%) 증가
 - 세외수입은 7.5조원으로 전년동기(7.4조원) 대비 0.1조원(1.4%)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은 55.1조원으로 전년동기(50.9조원) 대비 4.2조원(8.3%) 증가
 - 2024년 1분기 국세외수입 진도율은 25.6%로 전년동기(결산기준) 25.4% 대비 0.2%p 높은 수준

표 1 2024년 1분기(1~3월 누계) 총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분기				진도율		'23 실적 (C)	'24 예산 (D)
	'23.1분기 (A)	'24.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3.1분기 (A/C)	'24.1분기 (B/D)		
총수입(1+2)	145.4	147.5	2.1	1.4	25.3	24.1	573.9	612.2
1. 국세수입	87.1	84.9	△2.2	△2.5	25.3	23.1	344.1	367.3
2. 국세외수입	58.3	62.6	4.3	7.4	25.4	25.6	229.6	244.9
- 세외수입	7.4	7.5	0.1	1.4	25.9	26.5	28.5	28.2
- 기금수입	50.9	55.1	4.2	8.3	25.3	25.4	201.1	216.7

주 1. 2024년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순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예산수입(국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다만, 여기서는 수입의 성격(국세인지 아닌지)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세외수입은 예산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것으로 표기함.

2. 국세수입

가. 개관

2024년 1분기 국세수입은 84.9조원으로 전년동기(87.1조원) 대비 2.2조원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

- 2024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전년동기(결산기준) 25.3% 대비 2.2%p 낮고 최근 5년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 평균(25.9%)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

표 2 2024년 분기(1~3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분기				진도율		'23 실적 (C)	'24 예산 (D)
	'23.1분기 (A)	'24.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3.1분기 (A/C)	'24.1분기 (B/D)		
1. 국세수입	87.1	84.9	△2.2	△2.5	25.3	23.1	344.1	367.3
○ 소득세	28.2	27.5	△0.7	△2.5	24.4	21.9	115.8	125.8
- 종합소득세	1.7	1.6	△0.1	△7.9	8.1	7.0	21.4	23.1
- 양도소득세	4.3	4.2	△0.1	△2.7	24.3	18.5	17.6	22.4
- 근로소득세	18.5	16.8	△1.7	△9.2	31.2	27.0	59.1	62.0
- 이자소득세	1.0	2.2	1.2	114.4	20.1	45.6	5.2	4.9
○ 법인세	24.3	18.7	△5.5	△22.8	30.2	24.1	80.4	77.7
- 신고분	20.2	13.9	△6.3	△31.3	33.5	24.4	60.4	56.8
- 원천분	4.0	4.8	0.8	19.9	20.1	23.2	20.0	20.8
○ 부가가치세	16.5	20.2	3.7	22.5	22.3	24.8	73.8	81.4
○ 상속·증여세	2.9	2.7	△0.2	△6.3	19.9	18.6	14.6	14.7
○ 개별소비세	2.4	2.4	△0.1	△2.3	27.5	23.2	8.8	10.2
○ 증권거래세	1.2	1.4	0.2	16.2	20.3	26.7	6.1	5.4
○ 교통·에너지·환경세	2.6	2.7	0.1	2.7	23.9	17.4	10.8	15.3
○ 관세	1.9	1.6	△0.3	△14.2	26.0	18.3	7.3	8.9
○ 종합부동산세	0.2	0.1	△0.1	△35.0	4.0	2.9	4.6	4.1
○ 기타 ¹⁾	7.0	7.5	0.6	8.6	0.3	0.3	21.8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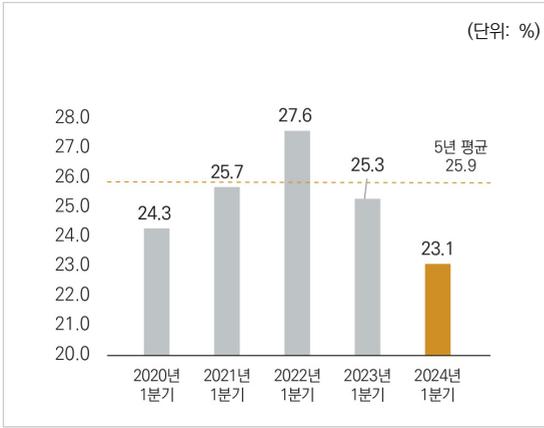
주 1)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

1. 2024년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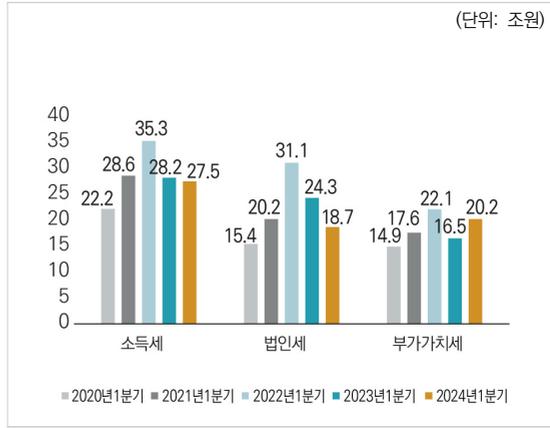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최근 5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 추이



주: 2020~2023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4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최근 5년 주요 세목의 1분기 실적



나. 세목별 증감원인

소득세는 27.5조원으로 기업 성과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28.2조원) 대비 0.7조원(2.5%) 감소

- 소득세 감소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전년동기 대비 1.7조원, 9.2% 감소)에 주로 기인
- 반면 이자소득세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원(114.4%) 증가

법인세는 18.7조원으로 2023년 법인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24.3조원) 대비 5.5조원(22.8%) 감소하며 1분기 국세수입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법인실적 감소에 따라 신고분 법인세(13.9조원)은 전년동기(20.2조원) 대비 6.3조원(31.3%) 감소한 반면 원천분 법인세(4.8조원)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조원(19.9%) 증가
 - ▶ 비금융업 업종별 당기순이익 증감률(전년대비, %): 전기전자 △81.2, 운수창고 △67.9, 철강금속 △50.3, 서비스업 △46.0, 건설업 △43.7, 화학 △35.8 등
 - ▶ 회사채 금리(3년 AA-, %): ('21) 2.08 → ('22) 4.16 → ('23) 4.39 → ('24.Q1) 4.00

부가가치세는 20.2조원으로 2023년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16.5조원) 대비 3.7조원(22.5%) 증가

- ▶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 %): ('23.Q3) 0.3 → (Q4) 0.2 → ('24.Q1, 속보치) 0.8

3. 국세외수입

2024년 1분기 국세외수입은 62.6조원으로 전년동기(58.3조원) 대비 4.3조원(7.4%)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25.6%로 전년 동기(25.4%) 대비 0.2%p 상승

- 2024년 1분기 국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는 기금수입 중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기금의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이 증가한 것(3.3조원 증가)에 주로 기인

표 3 2024년 1분기(1~3월 누계) 국세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분기				진도율		'23 실적 (C)	'24 예산 (D)
	'23.1분기 (A)	'24.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3.1분기 (A/C)	'24.1분기 (B/D)		
2. 국세외수입	58.3	62.6	4.3	7.4	25.4	25.6	229.6	244.9
○ 일반회계수입	4.2	3.6	△0.6	△14.3	32.7	31.8	12.8	11.2
- 재산수입	1.9	1.2	△0.7	△36.8	60.1	42.6	3.1	2.9
- 경상이전수입	2.1	2.1	0.0	0.0	25.1	29.8	8.3	6.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2	0.2	0.0	0.0	19.2	20.7	1.0	1.0
- 기타 ¹⁾	0.1	0.1	0.0	0.0	13.3	16.4	0.4	0.4
○ 특별회계수입	3.2	3.9	0.7	21.9	20.3	23.1	15.7	17.0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6	1.8	0.2	12.5	19.5	22.5	8.0	8.1
- 재산수입	0.1	0.4	0.3	300.0	23.1	50.9	0.3	0.8
- 경상이전수입	0.8	1.0	0.2	25.0	20.9	20.8	4.0	4.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4	0.4	0.0	0.0	26.9	24.2	1.6	1.8
- 기타 ¹⁾	0.3	0.3	0.0	0.0	16.5	16.6	1.8	1.7
○ 기금수입	50.9	55.1	4.2	8.3	25.3	25.4	201.1	216.7
- 사회보장기여금	22.9	21.7	△1.2	△5.2	25.7	23.5	88.9	92.3
- 재산수입	9.2	9.6	0.4	4.3	23.7	25.3	38.9	37.8
- 경상이전수입	12.0	13.8	1.8	15.0	33.6	34.7	35.7	39.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	1.6	△0.1	△5.9	17.2	15.5	9.7	10.3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7	8.0	3.3	70.2	18.5	23.7	25.3	33.8
- 기타 ²⁾	0.5	0.5	0.0	0.0	19.2	17.7	2.6	2.8

주: 1)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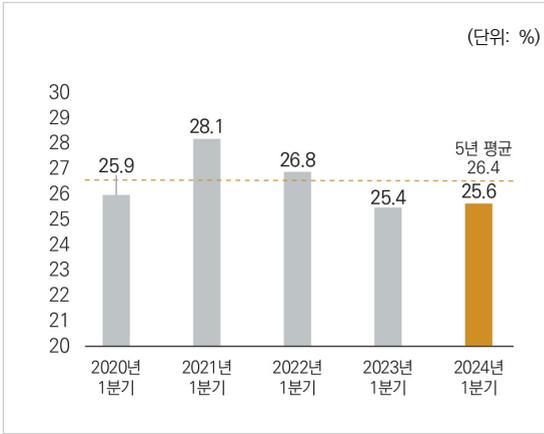
2)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1. 2024년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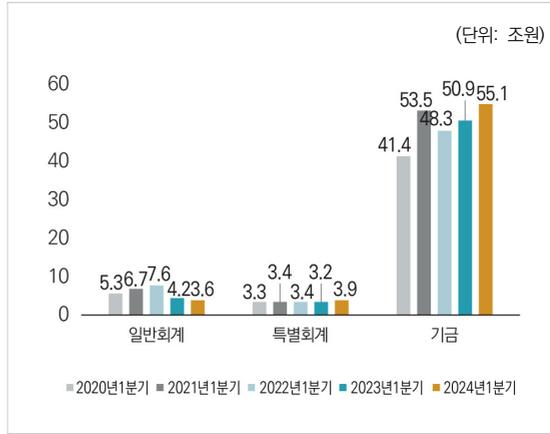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 최근 5년 1분기 국세외수입 진도를 추이



주: 2020~2023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4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최근 5년 국세외수입 1분기 실적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6조원으로 전년동기(4.2조원) 대비 0.6조원(14.3%) 감소하였고, 진도율은 31.8%로 전년동기(32.7%) 대비 0.9%p 하락
 - ▶ 1분기 세입조치된 2023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0.8조원) 등으로 재산수입(1.2조원)이 전년동기(1.9조원) 대비 0.7조원 감소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3.9조원으로 전년동기(3.2조원) 대비 0.7조원(21.9%)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23.1%로 전년동기(20.3%) 대비 2.8%p 상승
 - ▶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종전부동산²⁾ 매각 이익 일부가 수납(0.3조원)되는 등 재산수입(0.4조원)이 전년동기(0.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55.1조원으로 전년동기(50.9조원) 대비 4.2조원(8.3%)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25.4%로 전년동기(25.3%) 대비 0.1%p 상승
 - ▶ 주택도시기금의 다가구매입임대 용자원금 반납액(1.9조원) 발생 등으로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8.0조원)이 전년동기(4.7조원) 대비 3.3조원 증가
 - ▶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청산을 앞두고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수납되는 잉여금이 증가(1.1조원)하는 등 경상이전수입(13.8조원)이 전년동기(12.0조원) 대비 1.8조원 증가

2) 종전부동산이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존 청사 등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함

2024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현황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1. 국가채무 현황

2024년 3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15.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1,020.8조원, 주택채 잔액은 81.4조원, 외평채 잔액은 11.9조원

-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2.8조원 증가(발행 48.3조원, 상환 25.5조원), 주택채 잔액은 0.2조원 감소(발행 3.2조원, 상환 3.4조원), 외평채 잔액은 0.4조원 증가¹⁾

표 1 국가채무(중앙정부) 현황

(단위: 조원)

연월	중앙정부 채무	(구계열 GDP 대비, %)	(신계열 GDP 대비, %)	국채 합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고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권			
2014	503.0	(32.2)	(30.7)	498.1	438.3	52.8	7.0	2.6	2.4
2015	556.5	(33.6)	(32.0)	551.5	485.1	59.3	7.1	3.3	1.7
2016	591.9	(34.0)	(32.3)	587.5	516.9	64.0	6.7	3.9	0.5
2017	627.4	(34.2)	(32.4)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32.5)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3)	(34.3)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2)	(39.8)	815.2	726.8	78.9	9.5	3.3	0.7
2021	939.1	(45.1)	(42.3)	937.0	843.7	82.2	11.2	2.0	0.1
2022	1,033.4	(47.8)	(44.5)	1,031.5	937.5	82.2	11.8	1.9	0.1
2023	1,092.5	(48.9)	(45.5)	1,091.1	998.0	81.6	11.5	1.2	0.2
2024.1.	1,103.4	-	-	1,102.0	1,010.0	80.3	11.8	1.2	0.2
2024.2.	1,120.4	-	-	1,119.0	1,026.9	80.3	11.8	1.2	0.2
2024.3.	1,115.5	-	-	1,114.1	1,020.8	81.4	11.9	1.2	0.2

주: 1. 국채 합계에는 국제기구 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3. 중앙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변경 전후(구계열 2015년 기준 → 신계열 2020년 기준)를 모두 표시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5월호 및 6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5월호.

2. 국고채 발행 현황

2024년 국고채 총 발행 계획(한도)은 158.4조원이며, 이 중 순발행 규모는 49.9조원, 차환발행 규모는 108.5조원

- 2024년 3월 기준 국고채 발행 실적은 48.3조원, 상환은 25.5조원, 잔액은 1,020.8조원

표 2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본예산
총 발행한도	101.7	174.5	180.5	168.6	165.7	158.4
순발행	44.5	115.3	120.6	97.3	61.5	49.9
차환발행	57.2	59.2	59.9	71.4	104.2	108.5
- 만기상환분	35.4	45.1	45.4	56.2	86.0	85.7
- 조기상환분	21.8	14.1	14.5	15.2	18.2	22.8

자료: 기획재정부, 「1월 국고채 11.0조원 경쟁입찰 발행 계획」(2023. 12. 28.)

표 3 월별 국고채 발행 실적

(단위: 조원)

2023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99.0	952.0	965.1	958.1	975.6	993.4	988.4	1,003.7	1,015.3	1,004.4	1,011.6	1,016.1	998.0	—
발행	167.8	14.8	13.4	17.8	17.9	18.1	16.7	17.6	14.9	13.2	10.5	6.9	4.0	165.7
상환	106.3	0.3	0.3	24.8	0.3	0.3	21.8	2.3	3.3	24.1	3.3	2.3	22.1	105.2
2024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1,047.9	1,010.0	1,026.9	1,020.8										—
발행	158.4	12.5	17.5	18.4										48.3
상환	108.5	0.5	0.5	24.5										25.5

주: 2023년 상환 실적(105.2조원)에는 순상환 실적(1.1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차환 실적(104.2조원)보다 큼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5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일반회계 적자보전 현황

2024년 예산상 일반회계 적자보전 계획은 81.7조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발행, 기금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

- 2024년 1분기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는 38.7조원으로 예산 대비 47.4% 집행
 - ▶ 2023년의 경우 세수 결손 등으로 당초 계획(45.8조원) 대비 120.9% 집행(55.4조원)

표 4 일반회계 적자보전 계획 및 월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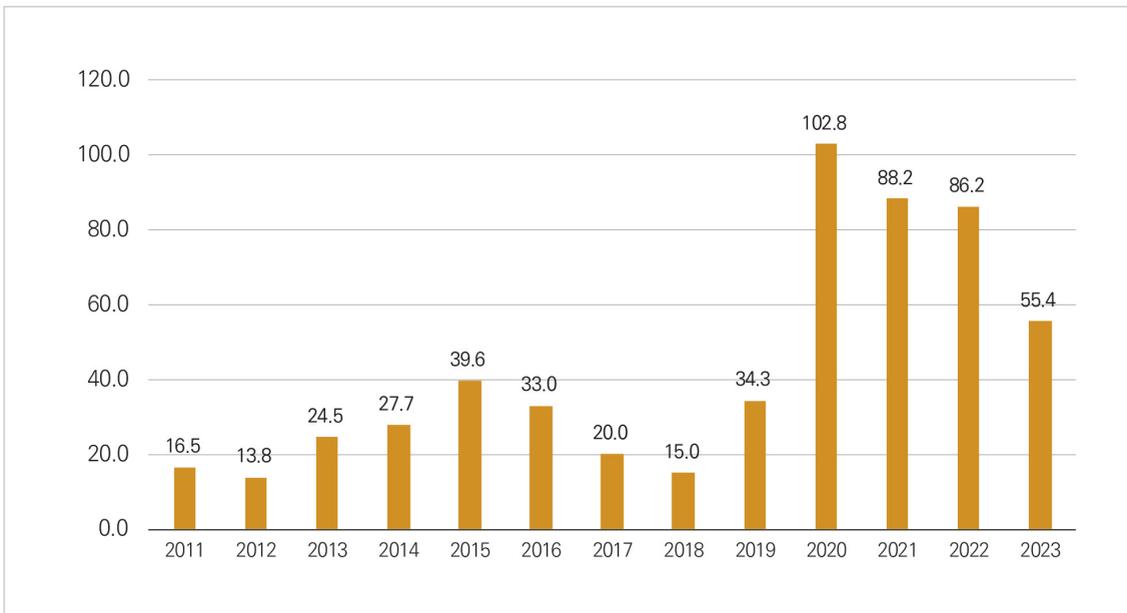
(단위: 조원)

연도	계획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3	45.8	4.0	6.0	12.0	4.0	4.0	4.0	4.0	4.0	3.8	—	5.6	4.0	55.4	
2024	81.7	9.7	13.0	16.0										38.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일반회계 적자보전 추이: 2011~2023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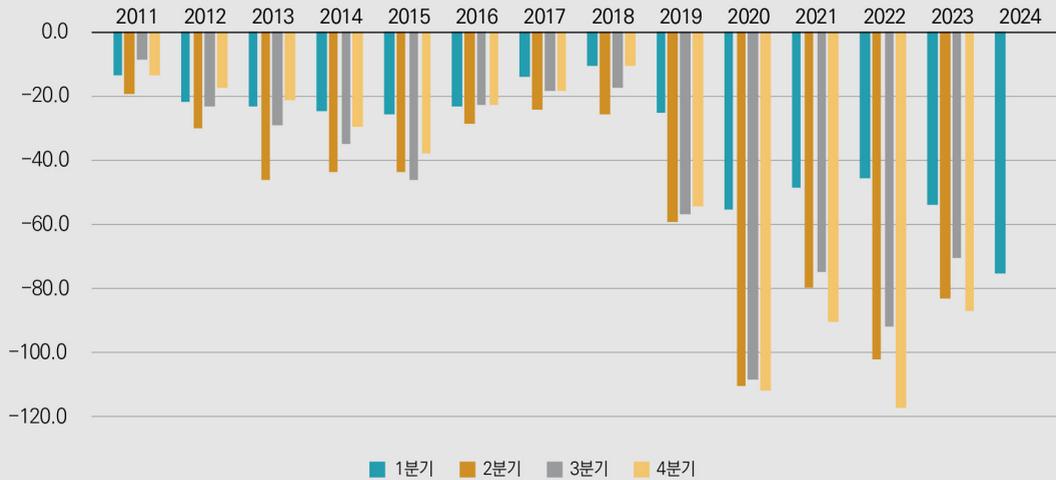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및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

- 2024년 1분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5.3조원 적자이며, 부족자금은 국고채 발행, 기금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조달

■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1~2024 ■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5월호)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고로,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은 연내 상환되며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음*
 - 2024년 1분기 누계 기준으로 재정증권 발행은 15.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국고금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은 45.1조원 규모

*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024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조원)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재정증권 발행	—	7.5	8.0										15.5
한국은행 일시차입	—	9.9	35.2										45.1

주: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금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월별 대출금액 기준임(상환을 반영한 잔액과 다름)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적

(단위: 조원)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재정증권 발행	—	4.0	5.0	4.0	7.5	6.0	6.0	7.5	4.5	—	—	—	44.5
한국은행 일시차입	3.5	16.5	28.1	17.1	6.1	15.9	13.6	12.8	—	—	—	4.0	117.6

주: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금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월별 대출금액 기준임(상환을 반영한 잔액과 다름)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국고채 금리 동향

2024년 3월 기준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32%로, 2023년 10월(4.07%) 이후 하락하였으나 2024년 2월에 상승 후 소폭 하락

표 5 최근 국고채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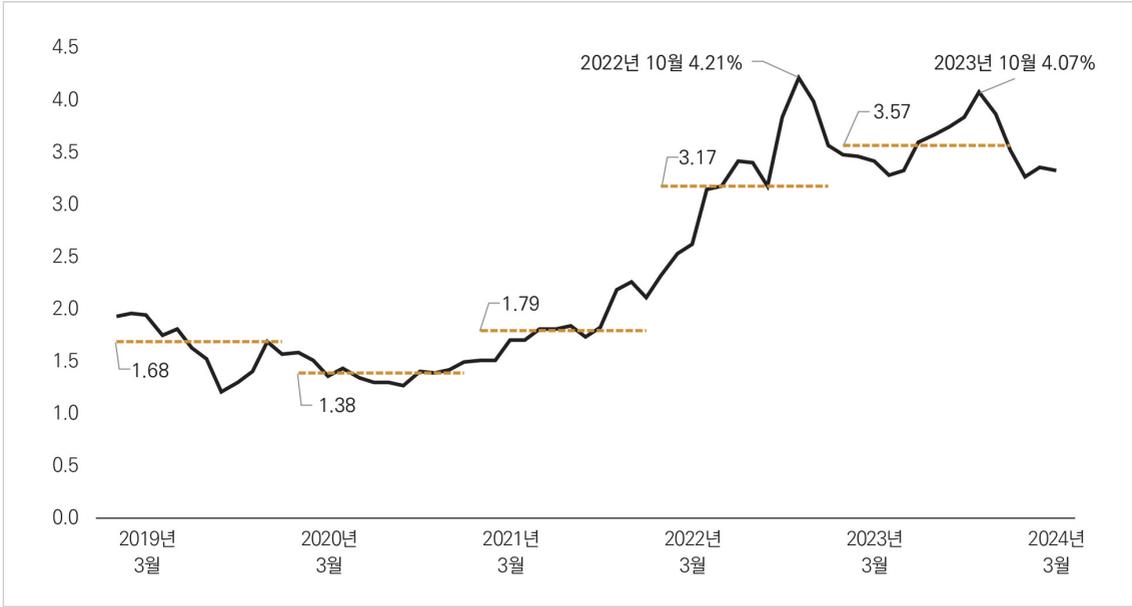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평균 조달금리		1.68	1.38	1.79	3.17	4.07	3.87	3.52	3.27	3.36	3.32
평균 유통금리	3년물	1.360	0.976	1.798	3.722	4.085	3.583	3.154	3.261	3.385	3.322
	5년물	1.480	1.335	2.011	3.743	4.203	3.621	3.156	3.294	3.432	3.354
	10년물	1.683	1.713	2.250	3.730	4.325	3.699	3.183	3.345	3.475	3.413
	30년물	1.682	1.823	2.310	3.683	4.069	3.562	3.088	3.283	3.379	3.313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5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단위: %)



주: 실선은 월 기준 평균 조달금리, 점선은 연평균 조달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국채백서」(각연도)와 「월간 재정동향」(2024년 5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국내 동향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한국과 주요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동향 및 제도 비교
외국인정책 관련 제21대 국회 입법 동향 및 추계 사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장 설 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6)

1. 개요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되며,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변경을 건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

- 정부는 2024년 3월 26일(화) 2024년 조세지출 운용방향 및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

그림 1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세법개정안 관련 주요 추진 일정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1월~)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 제출 (각 부처 → 기재부) (~4월 30일)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7월 중)	세법개정안·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 (9월 2일)
-------------------------	---	-----------------------	--------------------------------

-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은 2건이며 심층평가 대상은 21건(의무 7건, 임의 14건)
 - ▶ 예비타당성평가: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를 신설·변경하고자 할 때, 정부는 조사·연구기관의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 심층평가
 - (의무대상) 일몰도래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 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 평가
 - (임의대상)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평가

표 1 2024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분	조세특례 항목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2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조세지출 심층평가 (21건)	의무심층평가 (7건)	①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③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⑤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⑥개인의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⑦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임의심층평가 (14건)	①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신성장원천기술), ③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④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⑤전자 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⑥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⑦농지대토양도소득세 감면, ⑧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⑨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⑪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⑫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⑬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⑭해운기업 토탈 제도

자료: 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 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밝힘
 - ▶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과세·감면 제도별로 관리대상 유형¹⁾을 재분류하여 실제 관리 가능한 적극적 관리대상 위주로 심층평가 제도를 운용하는 등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 ▶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하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26개)는 효과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할 계획
 - ▶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원 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두 정책수단의 역할분담을 강화할 계획

1)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은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조세지출 특성을 일부 갖춘 항목은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항목은 구조적 지출로 분류하고 있음

2.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의 주요내용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2건)

-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 ▶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 ▶ (목적) 육아기 단축근로와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육아친화적 기업문화 유도
-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 (내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
 - ▶ (목적) R&D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의무심층평가 대상 (7건)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 (내용) 연구개발부서의 인건비, 재료비 등 R&D 비용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R&D비용의 최대 3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중소기업 40%)를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R&D비용의 최대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

표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 실적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141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352	46,989
계	27,340	27,296	37,231	46,434	48,129

주: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일반 등)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내용)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제외) 시설투자액의 15%(중소 25%) 및 직전 3년 평균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의 4%에 대한 세액공제

표 3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 실적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217	491	810	1,036	1,914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46	54,919
계	6,226	13,459	21,997	20,782	56,832

주: 전체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내용) 2024.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 10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 3년 75%, 2년 50% 세액감면

표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 실적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1,499	2,290	3,519	4,928	5,184
법인세	1,942	2,574	2,561	2,813	2,909
계	3,441	4,864	6,080	7,740	8,093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 (내용) 2024.12.31.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표 5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실적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개별소비세	750	1,085	1,470	1,948	2,020
교육세	225	325	441	584	599
계	975	1,410	1,912	2,532	2,619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 (내용) 2024.12.31.까지 전기 자동차 구매시 1대당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표 6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개별소비세	490	700	1,613	1,925	1,997
교육세	147	210	484	578	592
계	637	910	2,096	2,503	2,589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내용)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특례기부금: 한도 없음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가 있는 경우): $\text{소득금액} \times 10\% + \text{Min}[\text{소득금액의 } 20\%, \text{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 일반기부금(기타): $\text{소득금액} \times 30\%$

표 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10,788	10,807	14,401	15,688	13,533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내용)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한도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표 8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 실적 추이: 2022 ~ 2024년

(단위: 억원)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10,761	13,506	14,416
법인세	18,814	22,425	23,621
계	29,574	35,931	38,036

주: 전체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정규직근로자 전환 등)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임의심층평가 대상 (14건)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 (내용) 연구개발부서의 인건비, 재료비 등 R&D 비용에 대해 다음의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당기분: 당해연도 지출액 × 0~2%(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 증가분: 직전연도 지출액 초과분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내용)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제외) 시설투자액의 일부 및 직전 3년 평균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의 3%에 대한 세액공제
 - 일반: 시설투자액의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액의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세액공제

-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7항)
 - ▶ (내용) 2024.12.31.까지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시 1대당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표 9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실적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개별소비세	142	167	208	227	235
교육세	42	50	62	68	70
계	184	217	271	295	305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 ▶ (내용) 제주도 내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밖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전액 면제

표 10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따른 간접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부가가치세	426	579	685	548	567
개별소비세	168	179	212	183	190
주세	412	882	1,054	956	988
교육세	124	265	316	287	294
계	1,130	1,905	2,268	1,974	2,039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 (내용)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전자고지 신청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신고: 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750만원 한도
 - 전자고지: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표 1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829	847	1,105	1,535	1,615
법인세	27	27	28	29	30
부가가치세	393	399	411	446	462
계	1,250	1,273	1,544	2,010	2,107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내용) 농·임·어업 종사자가 구매한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표 1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부가가치세	1,492	1,401	1,498	1,554	1,609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 (내용)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대체 취득하여 1년 내 경작을 개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표 1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815	1,102	651	585	649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 ▶ (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표 14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법인세	47	64	53	76	78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 ▶ (내용)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 30% 감면

표 15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에 따른 관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관세	30	60	63	66	68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연장하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농·어민에 대해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200만원~400만원)을 차등하여 적용

표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24	138	54	65	68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 ▶ (내용) 벤처기업 주식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제휴법인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표 1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실적 추이: 2020 ~ 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0.2	0.4	2	2	2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3)
 - ▶ (내용) 2025.12.31.까지 135㎡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하여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 추정 곤란
-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4)
 - ▶ (내용) 보조금 등 정부지원이 없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제공되는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실적 추정 곤란
- 해운기업 톤세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 ▶ (내용) 2024.12.31.까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계산특례
 - 동 특례를 통한 법인세 감면실적에 관한 통계가 부재하여 추정 곤란

3.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매년 일몰도래가 예정되거나 신규 도입·변경되는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환류되지 못하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지속되고 있어 성과평가 제도를 통한 조세지출 관리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2019~2023년) 항목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일몰기한 연장으로 제언된 경우는 대부분 정부 안에 반영되었으나, 제도의 축소·재설계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결과일수록 그 환류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 2023년의 경우 일몰도래 항목의 단순·확대 연장 결과는 전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반면, 축소·폐지 또는 제도 재설계 결과의 경우 모두 반영되지 않음

표 18 최근 5년 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의 정부안 환류 현황: 2019 ~ 2023년

(단위: 건)

심층평가 결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순·확대 연장	2/2(100.0%)	6/7(85.7%)	5/6(83.3%)	5/5(100.0%)	3/3(100.0%)
축소연장 및 장기적 축소·폐지	1/1(100.0%)	3/4(75.0%)	2/8(25.0%)	1/8(12.5%)	0/5(0.0%)
제도 재설계	-	-	1/4(25.0%)	1/3(33.3%)	0/2(0.0%)

주: 1. B/A : A = 해당 유형의 심층평가 결과 총 건수, B = 해당 심층평가 결과 중 정부 세법개정안에 환류된 건수
 2. 괄호는 심층평가 결과 유형별 정부 세법개정안 환류 비중
 3. 의무심층평가 결과만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평가 대상 항목 대부분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함
 - ▶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건수 비중은 2019년 60.0%에서 2023년 85.7%로 증가
 - ▶ 2020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법률안 의결 전에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 채택되었음에도 예비타당성 평가 대부분이 면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²⁾

2) 동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6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2023.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음

표 19 최근 5년 간 정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현황: 2019 ~ 2023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시	2(40.0%)	3(60.0%)	1(25.0%)	1(12.5%)	1(14.3%)
면제	3(60.0%)	2(40.0%)	3(75.0%)	7(87.5%)	6(85.7%)
합계	5(100.0%)	5(100.0%)	4(100.0%)	8(100.0%)	7(100.0%)

주: 괄호는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조세특례 항목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러한 심층평가 결과의 미환류 및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세특례 제도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높지 않은 조세특례 항목이 신설·유지되면서 조세지출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합한 총 정부지출 측면에서 분야별 자원배분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관리 필요

-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재정지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힘³⁾
 -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라 16대 분야별 조세지출 총계표를 작성·공개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대 분야 분류를 추가하여 정부지출 통계를 통합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함
 - ▶ 고용 등 주요 분야부터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서도 조세지출예산과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점검 하도록 지침을 마련함⁴⁾
 - ▶ 세출예산 사업 검토 시 정책 목적과 수혜 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하여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심층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는 등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 부득이하게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2024년 정부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조세특례 항목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에 그 면제 사유를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 ▶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인 7건에 대한 평가결과의 정부 세법개정안 환류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3) 기획재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4.3., p.12
 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 2024.5., p.185

- 향후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 시 재정지출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 제도가 정비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밝힌대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개편 여부, 조세·재정지출의 중복지원 분야의 제도 정비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한국과 주요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동향 및 제도 비교

박지원 ·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2, 4647)

1. 개요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024.5.1.)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세대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

- 정부는 5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방안으로 ISA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주요 개편 방안으로 ISA의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ISA 내 손익통산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형별(중개·신탁·일임형)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는 등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밝힘
 - ▶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
 -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
 -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설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자¹⁾의 가입을 허용하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 ▶ 상장주식 직접투자 시 양도손실이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적용한다는 계획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ISA 제도 및 최근 동향 조사를 통해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ISA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일본·캐나다 등으로 이 중 ISA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함

1)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 국내 및 주요국 ISA 제도 및 현황

가. 한국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현행 ISA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서,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구분하여 세제혜택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 가입대상은 만 19세(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됨
 - ▶ 도입 당시에는 소득요건(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였으나, 2021년부터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
-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
 - ▶ 가입 대상 중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서민형”,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은 “농어민형”으로 가입하며,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200만원)에 비해 더 높은 한도(400만원)를 적용

표 1 ISA 제도 주요 개정 연혁

구분	2016~2018년	2019~2020년	2021년~현재
일몰 기한	~2018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일몰 폐지
가입 대상	근로·사업소득자(직전 또는 당해연도),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근로·사업소득 범위 직전 3개 연도로 확대	19세 이상 거주자(소득요건 폐지) *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편입 자산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좌 동)	- (좌 동) - 국내 상장주식, 채권 추가
운용 방식	신탁형, 일임형	(좌 동)	- (좌 동) - 투자중개형 추가
의무가입 기간	5년 (서민 ¹⁾ ·청년 ²⁾ 3년)	농·어민은 3년으로 축소	최소 3년(추가 연장 가능)
중도인출	중도인출 제한	(좌 동)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좌 동)	연간 2천만원 * 5년 내 이월납입 허용
세제혜택	-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을 손익통산 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까지 비과세 (서민형 ⁰ ·농·어민형 ⁰ : 250만원→'18년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좌 동)	- (좌 동) - 계좌 내 손익통산 대상에 주식 양도 차손(대주주분 제외) 포함 - '22년 서민형, 농·어민형 소득기준 상향: 3,500만원→3,800만원

주: 1)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사업자)

2) 15~29세 청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산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 ISA로 구분하며,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

- 일임형은 금융회사에 자산운용을 일임하여 운영하는 방식, 신탁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예금이 주 상품이며, 투자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상장주식이 주 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음

표 2 ISA 운용방식별 편입 자산 비교

구분	일임형	신탁형	투자중개형
편입 자산	펀드(수익증권, ETF, 리츠) 등	펀드(수익증권, ETF, 리츠), RP, 예금 등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수익증권, ETF, 리츠), RP 등
운용 방식	금융사의 포트폴리오로 운용	가입자가 직접 운용	
가입기관	투자일임업자(은행·증권사 등)	신탁업자(은행·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보도자료(2024.5.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가입기간 동안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 적용

-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5년 내 이월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 가능
- 가입기간 동안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 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250만원이었으나, 2018년 서민형·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
 - ▶ 2021년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면서 상장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적용
- ISA 계약기간 종료 후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불입하면, 불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세액공제²⁾ 적용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도입 당시에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고 의무가입 기간 내에 중도인출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축소되고, 납입원금에 대해 중도인출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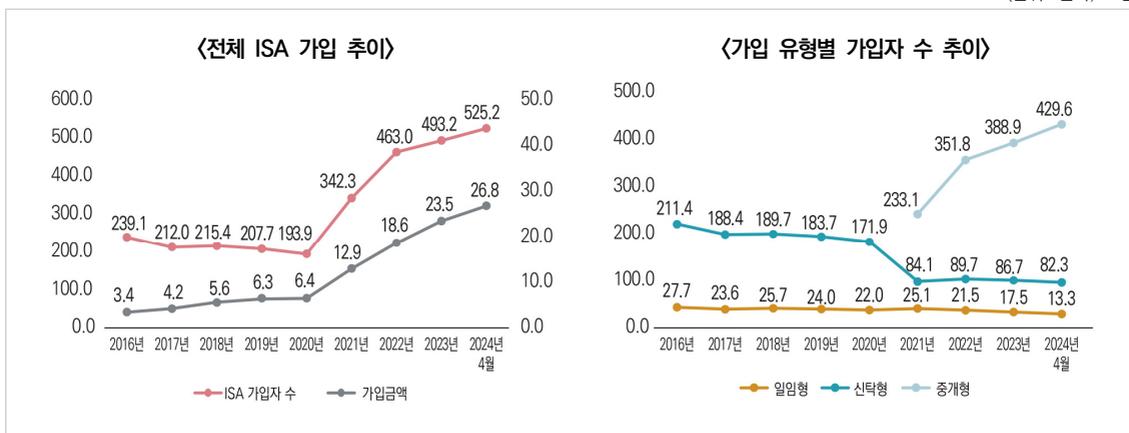
2)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2%, 총급여액 4,500만원(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15%

가입자 수는 도입 이후 2016년 239.1만명에서 2024년 4월 기준 525.2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입금액은 2016년 3.4조원에서 2024년 4월 26.8조원으로 확대

- 2016~2023년 기간 연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연평균 10.9%, 가입금액은 연평균 31.7% 증가
- ISA 도입 초기에는 편입자산이 대부분 예적금 중심의 저수익 금융상품이었으나, 2021년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증개형 ISA가 신설되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

그림 1 우리나라 ISA 가입 현황 및 추이

(단위: 만좌, 조원)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영국

국민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999년 기준 저축지원 프로그램³⁾을 통합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 이후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ISA를 신설하여 운영

투자 유형에 따라 예금형(Cash ISA), 증권형(Stock & Shares ISA), 혁신금융형(Innovative Finance ISA), 노후자금마련형(Lifetime ISA)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투자 유형을 선택하여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복수의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 ISA는 도입 당시 가입유형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Cash ISA, 주식 등에 투자하는 Stock & Shares ISA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2016년 P2P 대출에 투자 가능한 Innovative Finance ISA를 신설하고, 2017년에는 주택구입과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Lifetime ISA를 신설

3) 개인 자산 계획(personal equity plans: PEPs) 및 면세 특별 저축 계좌(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TESSA)를 통합

- ▶ Cash ISA는 은행 예금 등, Stock & Shares ISA는 주식·단위 신탁 및 펀드·회사채·국채 등, Innovative Finance ISA는 P2P 대출·크라우드펀딩 채권 등, Lifetime ISA는 은행 예금·주식 등에 투자
- 2015년도에는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Help to Buy(HTB) ISA를 도입하였으나, 2017년 주택구입과 60세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Lifetime ISA가 신설되면서 HTB ISA를 대체
 - ▶ Help to Buy ISA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구매 시 적립액의 25%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ISA로 2019년 11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 2029년 11월 30일까지 납입할 수 있음
 - ▶ Lifetime ISA는 첫 주택 구입이나 60세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연간 4,000파운드 한도 내에서 50세까지 적립 가능한 계좌로, 매년 적립금의 25%(연간 최대 1,000파운드)를 정부에서 보조
- 2024년에는 영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British ISA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ISA에서 발생한 이자, 양도차익 등 운용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없으며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

-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Lifetime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Cash ISA, Stock & Shares ISA, Innovative Finance ISA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Lifetime ISA는 노후자산형성을 위한 저축계좌이므로 첫 주택 구입 시 또는 60세 이후 인출 가능⁴⁾
- Flexible ISA 기능을 추가한 경우 중도 인출 시 동일 과세연도에 인출금액 만큼 추가 납입이 가능
 - ▶ 2016년부터 도입된 선택적 추가 기능으로 한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다른 유형의 ISA에 납입할 수 있음

납입한도는 연간 20,000파운드(2024년 5월 기준 약 3,452만원⁵⁾)로, 하나의 계좌에 최대 20,000파운드(Lifetime ISA는 최대 4,000파운드) 또는 여러 계좌에 분할 납입이 가능

- 제도 도입 이후 납입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7년에 20,000파운드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 통합한도(연간 20,000파운드) 내에서 Lifetime ISA는 연간 4,000파운드까지 납입 가능

영국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미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Junior ISA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Junior ISA가 자동으로 일반 ISA로 전환되어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음

- 가입 대상은 18세 미만의 거주자로 16세 미만은 부모명의로, 16~17세는 본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⁶⁾

4) 다른 이유로 현금이나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무단 인출) 25%의 인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부 보조금을 회수

5) 2024년 5월 평균 환율 1,726.09원/파운드(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기준

6) 어린이를 위한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Child Trust Fund('05년 도입, '10년말 폐지) 가입자는 가입이 불가

- 연간 납입한도는 9,000파운드로, 일반 ISA와 동일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연간 3,000파운드까지 증여세가 면제됨
 - ▶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예금형(Cash ISA)과 증권형(Stock & Shares ISA)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가입
- 일반 ISA는 중도 인출에 제한이 없지만, Junior ISA는 18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며, 18세가 되었을 때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일반 ISA로 전환되어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음

2020~2021년 ISA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약 2,222만명으로 2021년 영국인구의 33.0%⁷⁾ 가입

- 일반 ISA 가입 계좌수는 2021~2022년 약 1,175만개, 총 가입액 규모는 669.4억파운드(2019~2020년 1,301만 계좌, 746.4억파운드) 이후 감소하는 추세
- Junior ISA 계좌수는 2012~2013년 29.6만개에서 2021~2022년 121.2만개(4.1배)로 증가하였고, 총 가입액 규모도 3.9억파운드에서 14.9억파운드 규모(3.8배)로 증가

표 3 영국 ISA 제도

구분	ISA	Junior ISA
가입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거주자
가입 유형	Cash ISA Stock & Shares ISA Innovative Finance ISA Lifetime ISA	Cash ISA Stock & Shares ISA
납입 한도	연 20,000파운드	연 9,000파운드
계좌 수	납입한도 내에서 복수의 계좌 운영 가능 (유형별 계좌 보유 가능)	납입한도 내에서 복수의 계좌 운영 가능 (유형별 계좌 보유 가능)
세제혜택	납입한도 내의 이자 및 자본소득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 내의 이자 및 자본소득 전액 비과세 연 3,000파운드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의무가입 기간 및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없음 자유로운 입출금 허용	의무가입기간 없음 18세 전까지 중도인출 불가
비고	-	18세가 되었을 때 미사용 잔고 ISA로 전환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how-isas-work>)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Junior ISA는 제외한 기준

다. 일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금융투자를 통해 개인의 자산형성 및 가계 저축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월 도입

- 일본은 2000년대 이후 현금·예금에 치중된 개인 금융자산의 다변화를 위해⁸⁾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 기조를 이어 왔으며⁹⁾, 2014년 1월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이나 배당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NISA를 도입하여 적용대상 및 지원규모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 2024년부터는 가계의 자산소득을 늘리기 위한 “자산소득 배증계획(doubling asset-based income plan 2022)” 추진의 일환으로 NISA 가입 규모를 제고하기 위해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 NISA”로 개편

2024년 NISA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거주자로, 의무가입기간이 없고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간 투자한도 내에서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2022년까지 NISA의 가입 대상은 20세 이상이었으나 2023년 연령 기준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자금 운용 목적으로 운영되던 주니어 NISA는 2023년 말 일몰이 종료됨¹⁰⁾

NISA는 투자 방식에 따라 계좌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장형 NISA와 적립형 NISA를 운영

- 2014년 NISA는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반(一般) 유형으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 소액 장기 적립·분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적립형(つみたて) NISA 유형이 추가됨
 - ▶ 적립형 NISA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공모 투자신탁 및 ETF 등의 상품 중에서 고시로 지정된 상품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
- 2024년 NISA는 일반형 NISA의 명칭을 성장형(成長) NISA로 변경하고, 비과세 기간 영구화, 납입한도 2~3배 상향, 제도의 일몰(2023년 말) 삭제 등으로 확대 개편

연간 납입한도는 총 360만엔(2024년 5월 기준 약 3,153만원¹¹⁾)이며,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전체 한도액은 1,800만엔으로 제한

- 투자 유형별 연간 납입한도액은 성장형 NISA 240만엔, 적립형 NISA 120만엔으로 2024년부터 두 유형에 대한 혼합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최대 360만엔 납입 가능

8) 일본의 가계금융 자산 구성 비중(2022년 6월)은 현금·예금(54.9%) 비중이 가장 높고 보험(19.0%), 연금(7.7%), 상장주식(6.1%) 등의 순인 반면, 미국의 가계금융 자산 구성 비중(2021년 말)은 상장 주식(27.5%), 투자신탁(13.1%), 현금·예금(12.8%), 영국의 가계금융 자산 구성 비중(2021년 말)은 연금(41.6%), 현금·예금(27.2%), 보험(10.5%) 순임. 특히 일본의 노인가구 현금·예금 보유 비중은 전체 가계금융 자산의 30%로 높은 수준(“資産所得倍増に関する基礎資料集”, 내각관방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 사무국, 2022년 10월)

9) 2009년 1월~2013년 12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20→10%) 등의 정책이 추진

10) 주니어 NISA는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의 교육자금 저축 목적 등으로 납입하여 운용하고 18세 이후에는 일반 NISA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으나, 계좌 수가 성인 NISA의 5%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활발하지 않아 종전의 계획대로 일몰을 종료(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홈페이지 (https://www.bk.mufg.jp/column/shisan_unyo/b0166.html)) 참고)

11) 2024년 5월 평균 환율 875.88원/100엔(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기준

- ▶ 2023년까지는 일반형(연간 납입한도 120만엔)과 적립형(40만엔)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연간 최대 한도가 120만엔이었으나, 2024년부터 계좌 내에서 두 유형에 대한 혼합투자가 가능해지면 서 납입한도도 최대 360만엔으로 확대
- 인당 납입한도액은 총 1,800만엔(성장형의 경우 최대 1,200만엔)으로 유지되며, 보유상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해 매각상품의 취득가액만큼 비과세 상품을 매수할 수 있음

표 4 일본 NISA 제도 변화

2014~2023년					2024년 이후					
유형	운영 기간	가입 자격	납입한도	비과세 기간	유형	운영 기간	가입 자격	납입한도	비과세 기간	
일반형 (一般)	2014~2023년	20세 이상 ^주	연 120만엔 (총 600만엔)	5년	▶	성장형 (成長)	일몰 없음	18세 이상	연 240만엔 (총 1,200만엔)	제한 없음
적립형 (つみたて)	2018~2023년	20세 이상 ^주	연 40만엔 (총 800만엔) *일반형과 혼합투자 불가	20년	▶	적립형 (つみたて)	일몰 없음	18세 이상	연 120만엔 *성장형 혼합투자 가능(합산 한도 1,800만엔)	제한 없음
Junior형 (ジュニア)	2016~2023년	18세 미만	연 80만엔 (총 400만엔)	5년	▶	Junior형 (ジュニア)	일몰 종료	-	-	-

주: 2023년 가입 자격이 18세로 하향 조정
 자료: 일본 증권업협회, "2023年版 個人投資家のための 証券税制 Q&A, 新しいNISA対応", 2023.4.1.; 일본 국세청, "新NISAのあらまし", 2023.5.11.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NISA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양도·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 일본의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배당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 ▶ 일반 양도·배당소득세율(20%)은 소득세 15%, 주민세 5%(부흥특별소득세 0.315%는 별도)로 구성
- 일본은 NISA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과세 소득액 규모에 대한 별도 한도는 없음
- 2023년까지 비과세 적용 기간의 제한(일반형 5년, 적립형 20년)이 존재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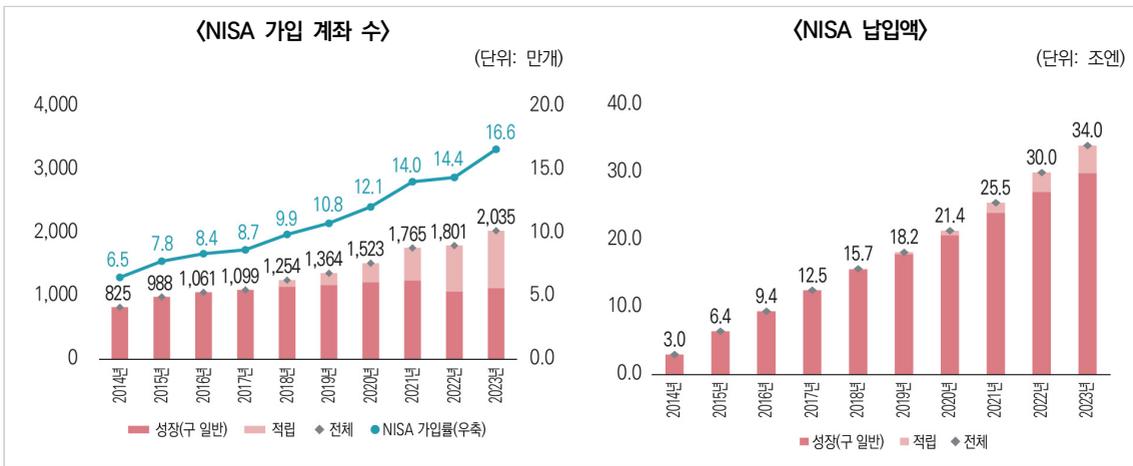
현금 및 예금에 집중되어 있는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NISA를 통해 매입 가능한 상품을 국내외 상장주식, ETF, REITS, 공모투자신탁 등으로 한정

- 적립형 NISA는 장기 적립 및 분산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투자신탁·ETF 상품에 한하여 매입이 가능하며, 예적금 및 채권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NISA 도입 이후 가입자 수 및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적립형 NISA 신설 이후 일반 NISA 가입자는 축소된 반면 20~30대를 중심으로 적립형 NISA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

- NISA 가입자 수는 2014년 825만명에서 2023년 2,035만명으로 증가(연평균 10.2%)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14년 6.5%에서 2023년 16.6%로 확대
- 2018년 적립형 NISA 도입 및 2021년 추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30대를 중심으로 NISA 가입자 수 증가
 - ▶ 2014년 대비 2022년 가입자 증가율(%): (20대) 28.5 (30대) 23.2 (40대) 16.9 (50대) 12.5 (60대 이상) 4.8
- 납입액¹²⁾의 경우 성장형 NISA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99.4%에서 2023년 88.0%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적립형 NISA 비중은 2018년 0.6%에서 2023년 12.0%로 확대

그림 2 일본 NISA 가입 추이



주: 1. NISA 가입률은 연도별 인구 수 대비 전체 가입 계좌 수(12월 기준)로 산출함
 2. 주니어 NISA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www.fsa.go.jp) 및 Worldbank 홈페이지(https://databank.worldbank.org/)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종합

주요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국은 ISA 간 연계, 투자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

- 영국은 제도 도입 이후 투자 유형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상품을 다양화하고, 자금 인출의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

12) 매수액(買付額)

- ▶ 2011년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Junior ISA 도입
- ▶ 2016년 기존 투자 유형(예금형, 증권형)에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Innovative Finance ISA 추가 신설, 자금인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인출 시 인출액 만큼 당해연도에 납입한도가 증가하는 Flexible ISA 기능 추가
- ▶ 2017년 첫 주택 구매 또는 60세 이후 노후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Lifetime ISA 신설
- ISA 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재산형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
 - ▶ Junior ISA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금 축적 후,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미사용 잔고가 자동으로 일반 ISA로 전환되며, 40세 미만인 경우 50세까지 적립하여 60세 이후 인출할 수 있는 Lifetime ISA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노후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일본은 NISA 편입상품을 주식·투자신탁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하는 특징이 있으며, 청년층 등의 투자 여력 및 성향 등을 고려하여 목돈을 납입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금액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는 방식의 적립형 NISA를 도입하여 가입률을 제고

- 가계 금융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NISA 편입대상 상품을 국내외 주식, REITS, 투자신탁 등으로 제한
- 2018년 적립형 NISA 도입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가입이 증가하면서, 정체되었던 NISA 전체 가입자 수 및 납입액이 확대된 추세를 보임
- 2024년부터는 종전의 비과세 적용기한(성장형(舊일반형) 5년, 적립형 20년)을 폐지하여 영구적으로 계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1개 계좌 내 성장형·적립형 간 혼합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장기적으로 NISA 투자 규모를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짐

영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ISA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납입한도 내에서 투자 유형별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 계좌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옴

- 영국은 ISA 도입(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을 다양화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Junior ISA 도입, Lifetime ISA 신설 등을 통해 장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
- 일본은 2018년 장기간 적립하여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적립형 ISA를 신설하고, 2024년부터는 납입한도 확대 및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편
- 우리나라는 운용방식(일입형, 신탁형, 투자중개형)을 선택하여 1인 1계좌만 운용할 수 있으나, 영국은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투자 유형별(예금형, 증권형, P2P투자형, 노후자금마련형)별로 각각 계좌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 1인당 1계좌를 운용하되 1개의 계좌 안에서 성장형과 적립형 ISA에 모두 투자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ISA 도입 이후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 왔으며, 2021년에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 대비 ISA 가입률은 영국·일본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

- 우리나라는 2016년 ISA 도입 이후 가입대상 확대, 의무가입기간 축소, 중도 인출 허용 등을 통해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여 국내 상장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편입자산의 범위를 확대
- 다만, 2024년 4월 기준 우리나라 ISA 가입률(가입자수/전체 인구 수)은 약 10.0%로 영국(33.0%), 일본(1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별 금융과세 수준 등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ISA 계좌를 통한 과세혜택 수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됨
 - ▶ 영국 및 일본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ISA를 통한 세제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소액주주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아 ISA를 통한 세제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 않은 상황
 - 단,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계좌 내 손익통산 대상에 주식 양도차손(대주주분 제외)을 포함
 - ▶ ISA 제도 측면에서 영국 및 일본은 계좌 내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과세 한도(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가입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측면
 - ▶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가입기간(3년)이 있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재개설해야 해 ISA를 통한 자금 운용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

표 5 주요국의 자본이득세율: 2024년 기준

	영국	일본	한국
세율	배당소득세율 8.75/33.75/39.35% 이자소득세율 0/20/40/45% 자본이득세율 10/20%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율 20.315%(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	이자·배당소득세율 14% (2천만원 초과 시 6~45% 종합과세)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go.jp),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발표된 ISA 납입한도·비과세 한도 상향 및 국내투자형 ISA 개편은 향후 가입률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영국·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가입률 제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인하는 제도적 개편 방향을 고민해 나갈 필요

-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납입한도 확대 수준(4,000만원)은 영국(원화기준 3,452만원), 일본(원화기준 3,153만원)과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현행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 대비 1인당 가입액(500만원) 수준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 확대에 따른 가입을 제고 및 가입액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024년 3월 말 연령대별 1인당 가입금액은 20세 미만 195만원, 20대 220만원, 30대 256만원, 40대 397만원, 50대 668만원, 60세 이상 1,078만원 수준

- 영국과 일본의 ISA는 생애주기 재산형성을 고려한 ISA간 연계 및 상품 다양화, 소액의 적립식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계좌 운영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온 사례이므로, 이들을 참고하여 ISA 편입 상품 및 계좌 운영 방식의 다변화 등을 검토해 볼 필요

표 6 주요국 ISA제도 비교

구분	영국	일본	한국
도입연도	1999.4.	2014.1.	2016.3.
제도명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가입대상	18세 이상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	만 19세 이상 거주자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 * 근로소득 5천만원(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농어민 ***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의무가입기간	없음	없음	3년
가입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구분 · Cash ISA · Stock and Shares ISA · Innovative Finance ISA · Lifetime ISA	투자 유형에 따라 구분 (적립형, 성장형)	자금운용방식에 따라 구분 (일임형, 신탁형, 투자중개형)
납입한도	연간 20,000파운드 (Lifetime ISA 연 4,000파운드 포함) *하나의 계좌에 연간 최대 2만파운드 납입 또는 여러 계좌에 분할하여 납입	연간 최대 360만엔 (적립형 120만엔, 성장형 240만엔) 총 1,800만엔 (성장형 최대 1,200만엔) *남은 투자한도 다음 해로 이연 불가	연간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 *5년 내 이월 납입 가능
계좌수	복수 계좌 허용 (투자유형별로 계좌 운영 가능)	1인 1계좌 (적립형과 성장형 혼합 투자)	1인 1계좌 (자금운용방식 중 택일)
편입가능상품	Cash ISA: 예금 등 Stock and Shares ISA: 주식, 채권 등 Innovative Finance ISA: P2P대출, 크라우드링 편당 채권 등	국내외 상장주식, ETF, 투자신탁, 리츠 등 (예금, 채권 등 제외)	일임형: 펀드 등 신탁형: 펀드, RP, 예금 등 투자중개형: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RP 등
세제혜택	납입한도 내 이자, 양도차익 등 운용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배당, 양도차익 등 운용 소득에 대해 비과세	가입기간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중도인출	제한 없음 *인출액만큼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도 회복	제한없음 *상품매각 시 차년도에 투자한도 회복	납입원금 내 인출 허용 *중도인출에 따른 투자한도 조정없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https://www.fsa.go.jp>);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https://dis.kofia.or.kr>)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외국인정책 관련 제21대 국회 입법 동향 및 추계 사례

한예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1)

1. 개요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정책¹⁾이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외국인정책 관련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동향 및 주요 추계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논의배경) 합계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인구피라미드는 중간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²⁾은 2005년 전국 228개³⁾ 시·군·구 중 33개였으나, 2022년 3월 기준 102개로 증가함⁴⁾

그림 1 미래 인구피라미드 변화 예측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에 따르면,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을 말함
 2)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가 0.5미만인 곳을 의미함
 3) 전국 시·군·구는 총 229개이나, 인용된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시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지 않고 1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였음
 4)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2022

- (정책 추진현황) 정부는 20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향후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음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하고, 「제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한국형 이민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표 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현행
기간		• 2023-2027년
비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책 목표	경제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의 유치와 육성,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안전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등
	통합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등
	인권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등
	협력/인프라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등

자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 법무부

2.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안 입법동향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안 중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은 총 25건으로, 외국인력 유치 등 경제 관련 법률안 7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전·통합·인권 관련 법률안 14건, 전담부서 설치 등 협력·인프라 관련 법률안 4건임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안 중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⁵⁾ 총 25건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에 따라 경제, 안전·통합·인권, 협력·인프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25건의 법률안 중 7건은 대안반영폐기 등 가결 처리되었으며, 18건의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경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 발의되어 3건이 처리되고 4건이 임기만료폐기되었음

5) 법률안의 주된 내용이 외국인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재정소요가 예상되어 추계를 하였거나, 미충분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 (안전·통합·인권)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고려인동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이 발의되어 3건이 처리되고 11건이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협력·인프라) 외국인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발의되어 1건이 처리되고 3건이 임기만료폐기되었음

표 2 제21대 국회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법률안 발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 처리현황	추가재정 소요
경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2022.1.17.)	• 외국인력유치를 위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	임기만료폐기	87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2022.12.29.)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사증을 법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임기만료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2023.7.20.)	•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임기만료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2023.7.10.)	•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무지원단 설치	임기만료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2022.8.4.)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등	수정안반영폐기 (2023.4.7.)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2023.10.19.)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	대안반영폐기 (2023.12.21.)	461,0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2022.8.16.)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특례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수정안반영폐기 (2023.4.7.)	191,500
안전· 통합· 인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2022.3.17.)	• 기업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24.1.25.)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2021.10.28.)	•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초기생활정착·취업에 필요한 지원 실시	원안가결 (2022.1.10.)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2020.7.27.)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사회통합 지원	임기만료폐기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2020.7.13.)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임기만료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2023.3.16.)	•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	임기만료폐기	76,0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2024.5.17.)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실시	임기만료폐기	46,000~ 76,0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2021.3.9.)	• 농업 분야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	임기만료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2023.3.28.)	•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	임기만료폐기	-

구분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 처리현황	추가재정 소요
협력· 인프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2021.9.2.)	•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임기만료폐기	7,26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2020.9.24.)	•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이주가족에 결혼 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신청자 가족 포함	임기만료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2022.1.26.)	•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임기만료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2023.8.9.)	• 지역별 고려인동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지원	임기만료폐기	19,523~ 36,2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12.21.)	•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특례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	임기만료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2022.1.10.)	•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23.10.6.)	2,0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2022.7.6.)	• 재외국민의 체류관리·차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	임기만료폐기	2,0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2022.9.16.)	• 출입국 관리 및 재한외국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신설	임기만료폐기	18,7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2024.2.2.)	• 출입국·체류관리·국적·난민·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	임기만료폐기	20,9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2022.12.21.)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수정가결 (2023.5.25.)	1,668

주: 1. 추가재정소요가 표기되지 않은 법률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미정부사유서를 첨부한 법률안임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세수 감소분을 의미함
 3. 추가재정소요는 외국인정책과 관계있는 부분의 추가재정소요만 기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대표발의)은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은 7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은 12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안의 추계 주요 사례

가. (경제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023.10.19.)

- 법률안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단일세율(19%)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2031년 7년간 총 4,610억원(연평균 6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 2022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단일세율 과세특례 실적치를 활용하여 추계
 - 외국인 유입증가율은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통계」에 따라 특정비자⁶⁾를 소지한 등록외국인 숫자의 연평균 증감률(2017~2022년 평균 1.03%) 적용
 - 외국인근로자가 동 제도로부터 수혜받는 평균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여 취업시점별로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고 가정

표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연도별 소득세 감면액

(단위: 억원)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년 취업	-295	-295	-295						
'23년 취업		-298	-298	-298					
'24년 취업			-301	-301	-301				
'25년 취업				-304	-304	-304			
'26년 취업					-307	-307	-307		
'27년 취업						-310	-310	-310	
'28년 취업							-314	-314	-314
조세지출 총계	-295	-593	-894	-903	-913	-922	-931	-624	-314
개정안 세수효과			-301	-605	-913	-922	-931	-624	-314

주: 1. 회색 음영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개정안의 세수효과이며 동 제도의 평균 수혜기간(3년)을 가정하고 추계했으므로 개인별 재직기간 및 과세특례 수혜기간에 따라 결과는 변동 가능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132) 비용추계서

나. (안전·통합·인권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23.3.16.)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760억원(연평균 15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 (지원대상)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매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 (지원단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평균 지원단가(19억원) 준용

6) 주재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행(E-6), 특정직업(E-7) 비자를 일컬으며 해당 비자는 동 제도를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자격을 나타내는 비자로서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2)」 등에서 성과지표로 제시된 바 있음

표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지원대상(A, 개)	8	8	8	8	8	40	8
지원단가(B, 억원)	19	19	19	19	19	95	19
추가재정소요(C=A×B)	152	152	152	152	152	760	152

주: 1. 실제 지원단가 및 공사 규모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2. 추가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712) 비용추계서

다. (협력·인프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명수의원 대표발의(2022.7.6.), 김형동의원 대표발의(2022.9.16.), 정점식의원 대표발의(2024.2.2.))

- 이명수·김형동·정점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부처의 명칭이 ‘이민청’, ‘국경이주관리청’,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다르고, 담당 사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동일

표 5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정책 전담조직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비교

(단위: 백만원)

대표발의자	신설 부처 이름	담당 사무	신설 조직으로 사무가 이관되는 부처	추가재정소요
이명수의원 (2022.7.6)	이민청 (법무부장관 소속)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책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2,016
김형동의원 (2022.9.16.)	국경이주관리청 (법무부장관 소속)	출입국 관리 및 재한외국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무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18,769
정점식의원 (2024.2.2.)	출입국·이민관리청 (법무부장관 소속)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	법무부	20,921

주: 실제 지원단가 및 공사 규모에 따라 각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외국인정책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억 1,600만원~209억 2,100만원으로 추계
 - ▶ 3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기존에 관련 사무를 수행했던 기관에서 이관되는 것을 전제
 - ▶ 신설 조직의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조직(기획, 예결산, 계약, 청사관리 등)의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 등)을 추계하고, 신규 청사 임차에 따른 청사임차료를 추계

7) 신규채용인원의 인건비, 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상승 추계

- 이명수의원안 추계시 새로운 부처의 신설에 따라 행정지원조직 인력은 필요하나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정부청사 공간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김형동의원안과 정점식의원안과 추계액 차이가 발생⁸⁾
- 김형동·정점식의원안은 행정지원조직과 청사 규모를 각각 새만금개발청, 재외동포청의 행정지원조직과 청사규모를 준용하여 추계

표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대표 발의자	행정지원조직 규모	신규 청사 규모	추계기간	재정수반요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이명수 의원	- (예측이 어려워 추계 제외)	- (기존 정부청사공간 조정 활용)	2024~2028	이민청 신설	387	390	401	412	426	2,016
				-인건비 등	387	390	401	412	426	2,016
김형동 의원	새만금개발청 행정지원조직 (53명) 준용	새만금개발청 청사규모 준용 (전용면적 2,603㎡)	2024~2028	국경이주관리청 신설	3,891	3,662	3,700	3,738	3,778	18,769
				-인건비 등	2,943	2,714	2,752	2,790	2,830	14,029
				-청사 임차료	948	948	948	948	948	4,740
정점식 의원	재외동포청 행정지원조직 (50명) 준용	재외동포청 청사규모 준용 (전용면적 3,052㎡)	2025~2029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4,314	4,093	4,132	4,172	4,210	20,921
				-인건비 등	2,971	2,750	2,789	2,829	2,867	14,206
				-청사 임차료	1,343	1,343	1,343	1,343	1,343	6,715

주: 신규채용인원과 청사 규모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채용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김형동·정점식의원안 추계와 같이 기존 행정지원조직 규모를 준용하여 추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추계액이 김형동·정점식의원안과 동일해짐

재정추계&세제 해외 동향

유럽연합의 연금·보건·장기요양·교육 분야 장기재정전망
: EC가 발간한 「2024 Ageing Report」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소비세제·재산세제



유럽연합의 연금 · 보건 · 장기요양 · 교육 분야 장기재정전망 : EC가 발간한 「2024 Ageing Report」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김 우 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8)

1. EC의 Ageing Report(고령화보고서) 개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EU 회원국 등의 경제전망과 연금, 보건, 장기요양,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전망을 제시하는 「Ageing Report」를 발간

- 연금, 보건, 장기요양,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지출 합계액을 ‘고령화비용(ageing costs 또는 age-related expenditure)’으로 명명하고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의 인구 · 경제 · 고령화비용 전망결과를 제시
 - ▶ 2018년 보고서까지는 실업급여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였으나 2021년 보고서부터 제외됨

2. 「2024 Ageing Report」의 전망 방법¹⁾

2024년 4월 발간된 고령화보고서는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의 인구 전망을 기초로 경제전망을 실시한 후, 분야별 지출 전망을 실시

-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 산하의 고령화작업반(Ageing Working Group; AWG)에서의 논의를 거쳐 EPC와 경제재정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DG ECFIN)이 공동으로 작성
- (1단계) EC와 개별 국가가 AWG를 통해 기초적인 가정과 전망 방법에 대해 합의한 후 EPC의 승인을 받음
 - ▶ 유럽연합통계국의 EUROPOP2023 인구 전망을 기초자료로 활용
 - EUROPOP2023은 Eurostat이 2022~2100년 기간에 대하여 인구를 전망하여 2023년 3월에 공개한 자료로, 일정 기간 과거 추세가 지속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차이가 사라지는 ‘부분 수렴’ 가정을 기초로 인구를 전망
 - ▶ 공통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국가별 경제성장, 노동환경,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경제전망 실시
- (2단계) 연금, 보건, 장기요양, 교육의 네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지출을 전망하여 종합
 - ▶ 전망기간은 2022년부터 2070년

1) 고령화보고서는 기준선 및 시나리오별 전망 외에 다양한 가정을 사용한 민감도 검사를 수행(높은 기대여명 수준, 낮은/높은 이주율, 낮은 출산율, 높은 물가, 노인의 높은 고용률, 낮은/높은 총노동생산성 증가율 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본 고는 핵심 결과 제시를 위해 이를 생략함

연금은 국가별 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되 국가 간 검토를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보건·장기요양·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모형을 적용하여 전망

- (연금) 각 국가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지출에 초점을 두어 연금급여 지출, 수급률, 급여율(benefit ratio)²⁾, 대체율(replacement rate)³⁾ 등의 항목에 대한 실적치(2000~2021년)와 전망치(2022~2070년)를 제출하고, AWG는 심층 동료 평가를 수행하여 방법론의 일관성을 확보

- ▶ 대상 제도: 공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하되 국가별로 자원할 경우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결과를 함께 보고
 - 공적연금 제도는 ① 소득연계 연금, ②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연금 또는 기본연금, ③ 최저연금 지급 목적의 자산조사에 기반을 둔 수당 등을 포괄
- ▶ 대상 급여: 노령연금 및 조기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타연금 등(비용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 제외)
- ▶ GDP 대비 연금 지출의 변화를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부양률), 65세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수 비율(수급률), 평균임금 대비 평균연금액(급여율), 노동시장의 영향 등으로 분해하여 분석

$$\Leftrightarrow \frac{\text{연금지출}}{\text{GDP}}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20~64세 인구}} \times \frac{\text{수급자 수}}{\text{65세 이상 인구}} \times \frac{\text{평균 연금 소득}}{\text{GDP/20~74세 근로시간}} \times \frac{\text{20~64세 인구}}{\text{20~74세 근로시간}}$$

$$= \text{부양률} \times \text{수급률} \times \text{급여율} \times \text{노동시장영향}$$

- GDP 대비 연금 지출에 미치는 노동시장의 영향은 고용률, 노동집약도, 경력이동의 효과로 구성

$$\Leftrightarrow \frac{\text{20~64세 인구}}{\text{20~74세 근로시간}} = \frac{\text{20~64세 인구}}{\text{20~64세 경활인구}} \times \frac{\text{20~64세 경활인구}}{\text{20~64세 근로시간}} \times \frac{\text{20~64세 근로시간}}{\text{20~74세 근로시간}}$$

$$= \frac{1}{\text{고용률}} \times \frac{1}{\text{노동집약도}} \times \frac{1}{\text{경력이동}}$$

* 고용률 효과: 20~64세 경활인구 대비 20~64세 인구(고용률의 역수)로, 고용률이 증가하면 연금지출 수준이 낮아짐

* 노동집약도 효과: 20~64세 근로시간 대비 근로인구 비율(노동집약도의 역수)로, 노동집약도가 증가하면 연금지출 수준이 낮아짐

* 경력이동 효과: 20~74세 근로시간 대비 20~64세 근로시간 비율(경력이동의 역수)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연금지출 수준이 낮아짐

- (보건) 공통의 거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기준선을 포함한 7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실시
 - ▶ 전망 과정: ① Eurostat의 연도별·연령별·성별 인구 전망 활용, ② 국가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성별 1인당 공공보건지출 전망, ③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2070년까지 연령별·성별 공공보건지출 추이 전망, ④ 연도별·연령별·성별 인구 전망에 연령별·성별 공공보건지출 전망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총 공공보건지출 전망치 산출
 - ▶ 시나리오: 기준선을 포함하여 총 7개 시나리오로 구성
 - (기준선) Eurostat의 인구전망을 활용하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50%만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것을 가정하며, 단위비용은 1인당 GDP에 따라 변화하고,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2022년 1.1로 시작하여 2070년 1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

2) 평균임금 대비 평균연금급여 비율

3) 평균임금 대비 수급 개시 시점의 평균연금급여 비율

- (인구통계 시나리오) 인구,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단위비용의 변화는 기준선과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되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1로 가정(즉, 단위 비용이 1인당 GDP와 비례하여 변화)
- (건강한 노화 없음 시나리오) 인구, 단위비용 변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연령별·성별 1인당 비용 수준이 전망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
 - * 연령별·성별 1인당 비용 수준을 이환율(罹患率, morbidity rates), 즉 특정 질환상태에 있는 비율의 근사치(proxy)로 사용
- (건강한 노화 시나리오) 인구, 단위비용 변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연수만큼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것을 가정(즉, 연령별·성별 이환율과 1인당 비용 및 사망률이 감소)
- (노동집약 시나리오) 인구,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보건의 노동집약도가 높은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당 GDP의 변화에 따라 단위비용이 변화하는 것을 가정
- (부문 복합 조정 시나리오) 인구 및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1로 가정하고, 단위비용은 ① 입원, ② 외래 및 보조 서비스, ③ 의약품 및 의료기기, ④ 예방관리, ⑤ 거버넌스 및 행정, ⑥ 자본투자 등으로 부문을 구분하여 각각의 과거 추세를 기초로 부문별 GDP 대비 지출을 전망한 후 합산
- (리스크 시나리오) 인구,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단위비용 변화는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2022년 1.5로 시작하여 2070년 1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

표 1 보건 전망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① 기준선	② 인구통계	③ 건강한 노화 없음	④ 건강한 노화	⑤ 노동집약	⑥ 부문 복합 조정	⑦ 리스크
인구	Eurostat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기대수명 증가 연수의 절반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것으로 가정	(기준선)	2022년 1인당 연령별·성별 비용 수준이 전망기간 유지	기대수명 증가 연수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것으로 가정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단위비용 변화	1인당 GDP에 따라 변화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근로시간당 GDP에 따라 변화	6개 부문별로 나누어 지출 변화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기준선)
소득(GDP)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비용 탄력성이 2022년 1.1에서 2070년 1로 수렴	1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1	비용 탄력성이 2022년 1.5에서 2070년 1로 수렴

주: 부문 복합 조정 시나리오의 6개 부문은 ① 입원, ② 외래 및 보조 서비스, ③ 의약품 및 의료기기, ④ 예방관리, ⑤ 거버넌스 및 행정, ⑥ 자본투자를 가리킴

자료: EC(2023)의 「2024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 Projection Methodologies」에 수록된 [Table II.2.1]을 재구성

- (장기요양) 보건분야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거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기준선을 포함한 7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실시
 - ▶ 전망 과정: ① Eurostat의 연도별·연령별·성별 인구 전망을 활용하여 의존인구와 비(非)의존인구 구분, ② 4가지 돌봄 유형별로 구분(비공식 돌봄, 재가현물돌봄, 시설현물돌봄, 현금지원)하여 돌봄 유형별로 수급자 수 추정, ③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가현물돌봄, 시설현물돌봄, 현금지원 각각에 대하여 연령별·성별 1인당 비용 수준 산출, ④ 기준연도에 맞추어 현물은 근로시간 당 GDP로, 현금은 1인당 GDP로 비용 조정(indexation), ⑤ 각 유형별 연령별·성별 인구와 1인당 비용을 곱한 후 합산하여 총 공공장기요양 지출 전망치 산출
 - 의존인구: 유럽연합의 소득 및 생활여건조사(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 중 6개월 이상 최소 1가지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또는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에 이상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
 - 돌봄 유형별 수급자 수: 의존 인구 대비 돌봄 유형 각각의 수급자수 비율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정
 - 돌봄 유형별 연령별·성별 1인당 비용: 국가별 자료, Eurostat의 보건계정체계(SHA) 및 유럽사회보호통합시스템통계(ESSPROS)를 사용하여 기준연도의 각 돌봄별 총 공공지출을 수급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후 GDP를 활용하여 조정(indexation)
 - ▶ 시나리오: 기준선을 포함하여 총 6개 시나리오로 구성
 - (기준선) Eurostat의 인구전망을 활용하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50%만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것을 가정하며, 돌봄 유형별 수급률은 2022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현물의 경우 근로시간당 GDP, 현금의 경우 1인당 GDP에 따라 단위비용이 변화하며,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2022년 기준으로 지출 사분위수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1, 나머지 국가들은 1.1로 시작하여 2070년 모두 1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
 - (건강한 노화 없음 시나리오) 인구,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정책환경, 단위비용 변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2019~2021년 평균 의존인구 비율이 전망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건강한 노화 시나리오) 인구,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정책환경, 단위비용 변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연수만큼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것을 가정
 - (수급률 수렴 시나리오) 전체 인구, 인구 대비 의존인구 비율,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단위비용 변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공적현물돌봄에 대한 수급률은 EU의 평균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을 가정
 - (비용 수렴 시나리오) 전체 인구, 인구 대비 의존인구 비율, 정책환경, 단위비용 변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국가별 연령별·성별 1인당 비용 수준이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

- (리스크 시나리오) 전체 인구, 인구 대비 의존인구 비율, 단위비용 변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기준선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국가별 연령별·성별 1인당 비용 수준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고, 공적현물돌봄 공급률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장기요양 전망 시나리오

구 분	시나리오					
	① 기준선	② 건강한 노화 없음	③ 건강한 노화	④ 수급률 수렴	⑤ 비용 수렴	⑥ 리스크
인구	Eurostat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인구 대비 의존인구 비율	기대수명 증가 연수의 절반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것으로 가정	2019~2021년 의존인구 비율이 전망 기간 유지	기대수명 증가 연수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것으로 가정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연령별·성별 1인당 지출 수준	2022년 비용 수준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국가별 비용 수준이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	국가별 비용 수준이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
정책환경	돌봄 유형별 수급률이 2022년 수준으로 유지	(기준선)	(기준선)	공적현물돌봄 수급률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	(기준선)	공적현물돌봄 수급률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
단위비용 변화	(현물) 근로시간당 GDP, (현금) 1인당 GDP로 조정 * 국가별 추가 조정 실시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소득(GDP)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2022년 지출 사분위수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1, 나머지는 1.1에서 2070년 모두 1로 수렴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자료: EC(2023)의 「2024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 Projection Methodologies」에 수록된 [Table II.3.1]을 재구성

- (교육) UNESCO-OECD-Eurostat 교육통계데이터(UOE)를 바탕으로 네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학생 수 및 1인당 공교육 지출을 추정 후 총 공공교육지출(GDP 대비 총 공공교육지출) 산출
 - ▶ 학령인구 집단 구분: 국제교육표준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를 활용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네 집단을 다시 의무교육과 비의무교육으로 구분
 - (의무교육) ① 초등교육(ISCED 1), ② 전기중등교육(ISCED 2)
 - (비의무교육) ① 후기중등교육(ISCED 3~4), ② 고등교육(ISCED 5~8)
 - * 전기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에 해당되고, 후기중등교육은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며, 고등교육은 우리나라 대학 과정에 해당
 - ▶ 전망과정: 학령인구 집단별 ① 학생 수를 추정하고, ② 1인당 공교육 지출을 추정하여 합산
 - 학생 수 추정: 의무교육의 경우 2021년의 취학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비의무교육의 취학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공교육 지출 추정: 공교육 지출은 ① 교직원 인건비, ② 기타경상지출, ③ 자본지출, ④ 지원금(장학금,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구성하고, 교직원 인건비는 교직원 1인당 비용으로, 나머지 비용은 학생 1인당 비용으로 정의하여 추정
 - * 교직원 수 대비 학생 수 비율은 전망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GDP 대비 공공교육지출은 교직원 수(교직원 인건비) 또는 학생 수(나머지 비용)에 비례하고, GDP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
- ▶ 시나리오: 비의무교육 집단의 취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45년까지 EU에서 취학률이 가장 높은 세 국가(그리스·벨기에·핀란드)의 평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는 '높은 취학률' 시나리오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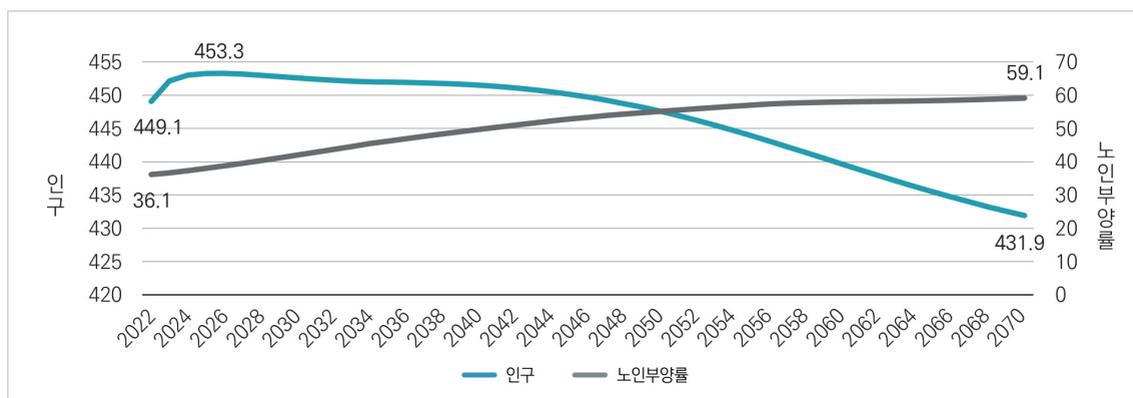
3. 「2024 Ageing Report」의 주요 전망 결과⁴⁾

EU 회원국의 인구는 2026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부양률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EU 회원국의 인구는 2022년 4.49억명에서 2026년 4.53억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70년 4.3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2070년 인구는 2022년 대비 4% 감소)
 - ▶ 13개국은 2022년부터 2070년까지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등 국가마다 상이한 추세가 나타나지만, 고령화는 모든 나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부양률) 과거 EU의 노인부양률은 2010년 29%에서 2022년 36%로 증가하였는데, 향후 2041년에 50%를 초과한 후 2070년에 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EU의 인구 및 노인부양률 전망 결과: 2022~2070년

(단위: 백만명, %)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을 바탕으로 재작성

4) 고령화보고서는 27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각 국가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 국가별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결과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에 본 고에서 개별 국가가 아닌 EU 전체 수준에 대하여 언급하는 전망 결과는 모두 노르웨이를 제외한 EU 회원국에 대한 것임

- (2021년 보고서와의 비교) 2021년 전망에 비해 인구 전망 수준은 더 높지만(+790만명), 노인부양률은 이전 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여성과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전반적인 고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화로 인해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총 근로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참여율) 전망기간 생산가능인구(20~64세)의 노동시장참여율은 3.3%p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55~64세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10.1%p 증가하지만, 전체 경제활동참여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전망기간에 전체 경제활동참여인구는 2,455.6만명(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고용률) 고용률 증가가 전망되지만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근로시간이 9% 감소될 것으로 예상
 - ▶ 생산가능인구의 실업률은 2022년 5.9%에서 2070년 5.1%로 감소하는 반면, 고용률은 동 기간 74.7%에서 7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제적노인부양률(6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20~64세 고용인구)은 2022년 45.7%에서 2070년 69.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3 EU의 인구 및 노인부양률 전망 결과: 2022~2070년

(단위: 천명, %, %p)

구 분	경제활동 참여인구 (20~64세)	노동시장참여율(20~64세)			실업률 (20~64세)	고용률 (20~64세)	근로시간 증가율	경제적노인 부양률	
		20~24세	25~54세	55~64세					
2022년(A)	208,903	79.4	61.6	86.7	65.4	5.9	74.7	0.6	45.7
2070년(B)	184,347	82.7	63.7	88.2	75.5	5.1	78.5	-0.2	69.9
차이(B-A)	-24,556	3.3	2.1	1.5	10.1	-0.9	3.8	-0.8	24.2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을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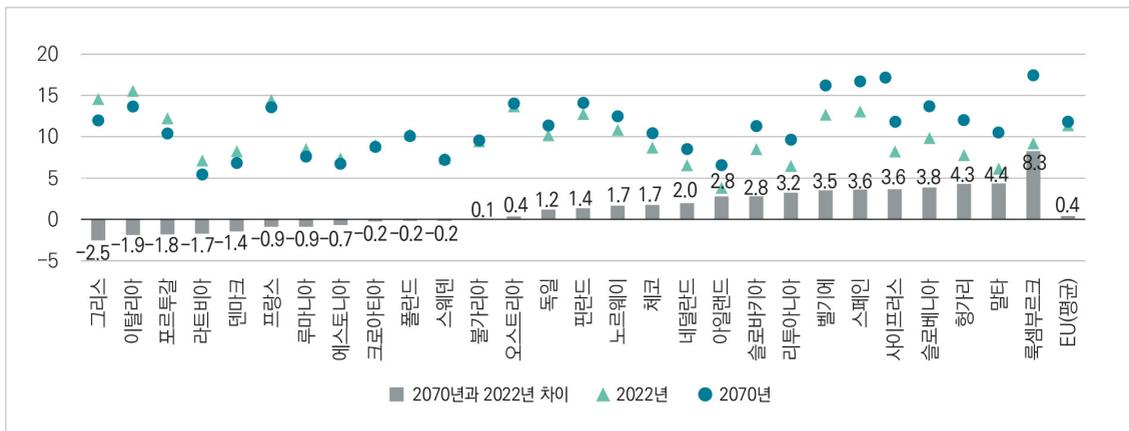
- (경제성장) 2022~2070년 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1.3%로 전망
 - ▶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GDP 증가의 유일한 요인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남
- (2021년 보고서와의 비교) 고용률은 2022~2070년 평균 0.7%p 높고, 55~64세 고용률은 2.2%p 더 높게 전망된 반면, 평균 GDP 성장률은 0.1%p 낮게 전망됨

2070년까지 EU 회원국의 전반적인 연금 지출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증가는 노인부양률 증가에 기인

- 전망기간(2022~2070년) EU 회원국의 연금 지출은 GDP 대비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동 기간 17개 국가에서 연금 지출이 증가하고, 11개국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국가들 중 일부(말타, 리투아니아, 헝가리, 키프로스 등)는 연금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증가하는 반면, 감소하는 국가들 중 일부(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는 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평균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전망 기간을 2022~2045년과 2045~2070년으로 나누면, 첫 번째 시기에서는 GDP 대비 연금 지출이 평균 0.7%p 증가하는 반면, 두 번째 시기에서는 0.3%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 전망 기간 75세 미만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7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수 비율은 증가하여 2070년에는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연금 지출이 총 연금 지출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2022년에 비해 40% 증가)

그림 2 EU의 GDP 대비 연금지출 전망 결과: 2022~2070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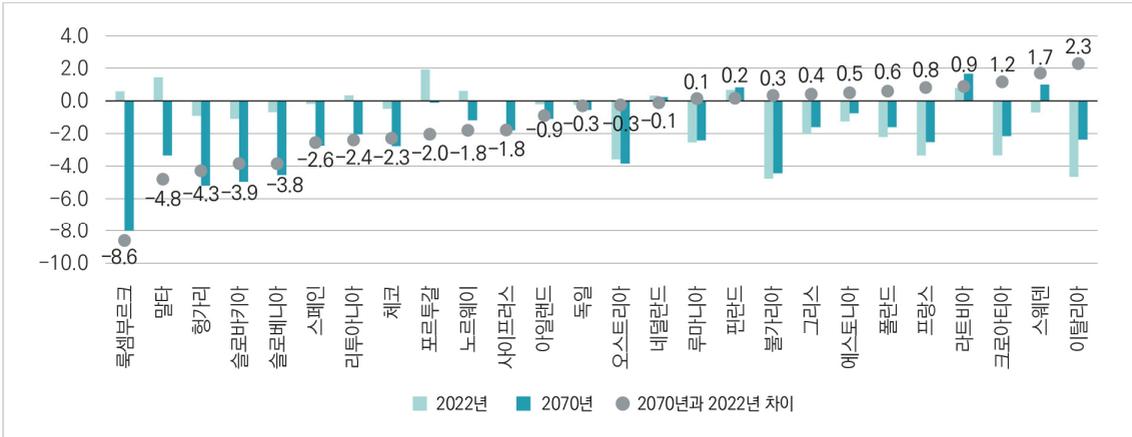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을 바탕으로 재작성

-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15개 국가에서 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3 EU의 GDP 대비 연금 재정수지 전망 결과: 2022-2070년

(단위: %, %p)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을 바탕으로 재작성

- (연금 지출 변화의 요인 분해) 노인부양률의 증가는 연금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65세 이상 수급률의 변화와 급여율, 노동시장의 변화는 연금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 (노인부양률)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률 증가는 GDP 대비 연금지출을 6.1%p 증가시키지만, 65세 이상의 수급률, 급여율, 노동시장 효과에 의해 일부가 상쇄됨
 - ▶ (수급률) 전망기간 수급률은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GDP 대비 연금지출을 1.5%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연금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2030년대까지 나타나고 2040년 이후에는 수급률의 변화가 연금지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 (급여율) 헝가리(GDP 대비 연금지출 0.8%p+), 슬로베니아(GDP 대비 연금지출 0.7%p+) 및 네덜란드(GDP 대비 연금지출 0.2%p+)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급여율의 변화는 향후 GDP 대비 연금지출 수준을 평균 3.1%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0년간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일련의 개혁으로 인해 전망기간 급여율이 평균 8.3%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변화는 GDP 대비 연금지출 수준을 0.8%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고용률 및 직업의 변화가 전반적인 노동시장 효과를 주도하여 연금 지출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수급률 및 급여율의 감소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음

표 4 EU의 GDP 대비 연금지출 변화 요인의 분해

(단위: GDP 대비 %p)

구분	2022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	부양률	수급률	급여율	노동시장 효과				잔차	2070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
					합계 (a+b+c)	고용률 (a)	노동 집약도 (b)	경력 이동(c)		
유럽연합 (평균)	11.4	6.1	-1.5	-3.1	-0.8	-0.6	0.1	-0.3	-0.3	11.8

주: 2022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과 2070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의 단위는 %, 나머지 셀의 단위는 GDP 대비 %p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을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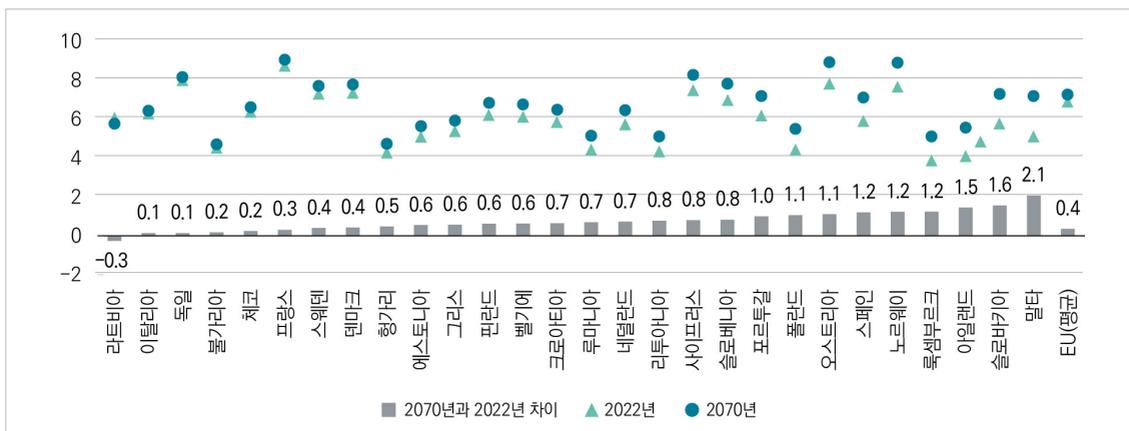
- (2021년 보고서와의 비교) 2022년부터 2070년까지의 평균 공공 연금 지출 수준은 2021년 보고서에서 전망한 것보다 GDP 대비 1%p 높음
 - 2021년 보고서보다 연금 지출 전망치가 높은 것은 이전 전망보다 급여율이 높게 전망된 것에 기인
 - 급여율이 높게 전망된 것은 대부분 저시경제전망의 변화 때문인데,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경우 지속가능성 요소를 폐지하고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비용 조정을 재도입한 것에 기인

2070년까지 EU의 GDP 대비 보건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

- (기준선 전망 결과) 2022년부터 2070년까지 EU의 GDP 대비 보건 지출은 약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라트비아에서는 GDP 대비 보건 지출이 0.3%p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증가

그림 4 EU의 GDP 대비 보건 지출 전망 결과: 2022~2070년

(단위: %, %p)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을 바탕으로 재작성

-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① 낮은 출산율, ② 기대 수명 증가, ③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환율(특정 질환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출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건강한 노화 시나리오에서만 GDP 대비 보건 지출 규모가 0.04%p 감소함

표 5 EU의 시나리오별 GDP 대비 보건 지출 전망 결과

(단위: %, %p)

구분	기준선	시나리오					
		리스크	인구통계학	건강한 노화	건강한 노화 없음	노동집약	부문 복합 조정
2022년(A)	6.91	6.91	6.91	6.91	6.91	6.91	6.91
2070년(B)	7.27	8.13	7.07	6.87	7.72	7.65	7.00
차이(B-A)	0.36	1.22	0.16	-0.04	0.81	0.74	0.09

주: 차이는 단수조정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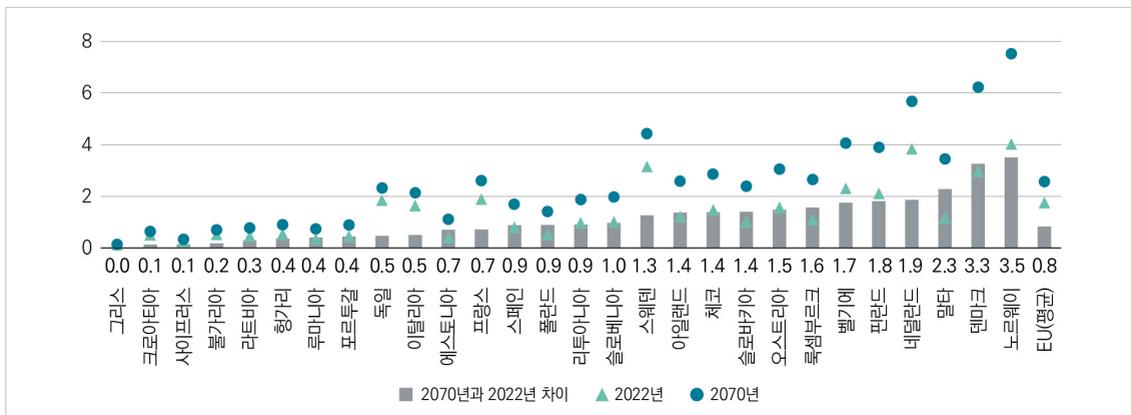
- (2021년 보고서와 비교) 이전 보고서의 GDP 대비 보건 지출 전망치보다 2024년 보고서의 전망치가 0.4%p 더 낮게 나타남
 - ▶ 이전 보고서보다 신규 전망치가 더 낮은 것은 ① 기준연도(2022년)의 실적치가 이전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0.3%p 더 낮고, ② 갱신된 연령별 비용 추이로 인해 전망 결과가 0.1%p 더 낮아졌으며, ③ 1인당 GDP 증가율 전망치의 수정으로 인해 전망 결과가 0.1%p 추가로 낮아진 것에 기인함

EU의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수준도 207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준선 전망 결과) EU의 장기요양 지출은 2022년 GDP의 1.74%에서 2070년 GDP의 2.58%로 0.8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동 기간 지출이 48% 증가)
 - ▶ 국가별 지출 증가 수준은 다양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증가가 예상됨

그림 5 EU의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전망 결과: 2022~2070년

(단위: %, %p)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장기요양은 2070년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만, 보건 지출과 마찬가지로 의존인구 비율 등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지출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건강한 노화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까지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증가 수준이 0.68%p로, 그 수준이 기준선보다 낮게 나타남

표 6 EU의 시나리오별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전망 결과

(단위: %, %p)

구분	기준선	시나리오				
		리스크	건강한 노화	건강한 노화 없음	수급률 수렴	비용 수렴
2022년(A)	1.74	1.74	1.74	1.74	1.74	1.74
2070년(B)	2.58	4.46	2.43	2.75	3.30	3.58
차이(B-A)	0.83	2.71	0.68	1.00	1.55	1.83

주: 차이는 단수조정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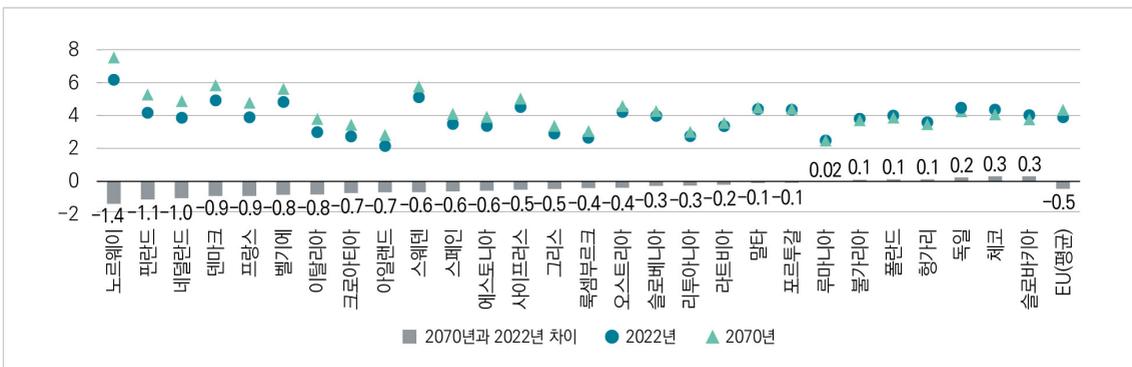
- (2021년 보고서와 비교) 2024년 보고서의 2022~2070년 평균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전망치는 2021년 보고서의 전망 수준보다 0.2%p 더 낮게 나타남
 - ▶ 새로운 인구 전망은 장기요양 지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전 보고서보다 신규 전망 치가 더 낮은 것은 GDP 추정치의 갱신으로 전망 결과가 0.2%p 더 낮아진 것에 기인
 - 갱신된 연령별 비용 추이는 덴마크,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음
 - * 덴마크에서는 연령별 비용 증가율이 더 높아져 장기요양에 대한 신규 전망치가 더 높아진 반면, 슬로베니아에서는 연령별 비용 증가율이 더 낮아져 장기요양에 대한 신규 전망치가 더 낮아짐

반면, EU의 GDP 대비 교육 지출 수준은 학생 수가 줄어들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EU의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2022년 GDP의 4.4% 수준에서 2070년 3.9%로 0.5%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국가별로는 7개 국가에서 증가하는 반면, 21개 국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ISCED 1~ 4)의 지출 감소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교육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의 지출 증가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EU의 GDP 대비 교육 지출 전망 결과: 2022~2070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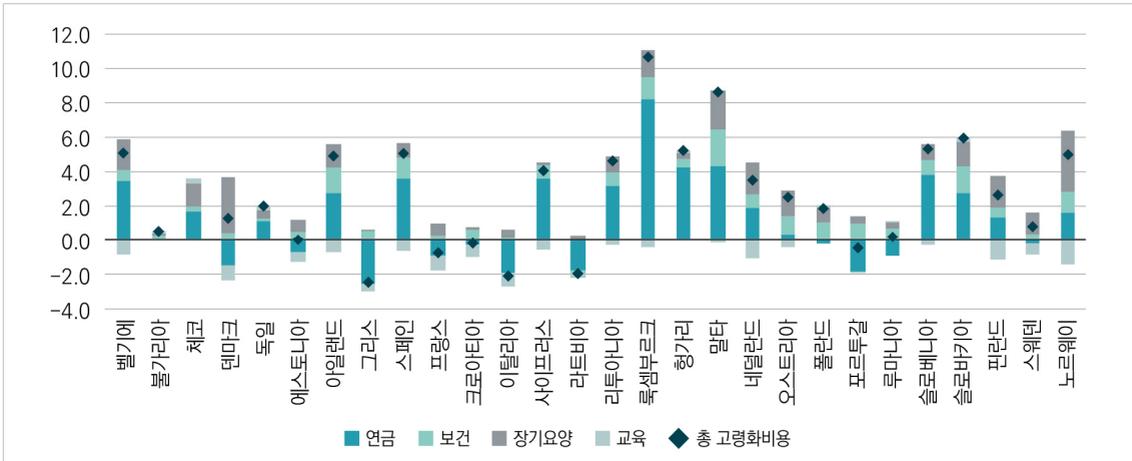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교육 지출 변화의 요인 분해) 교육 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들(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들(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는 비의무교육 연령대 학생들의 노동시장 참여 감소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높은 취학을 시나리오) EU의 GDP 대비 교육 지출이 기준선에 비해 평균 약 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다만, 국가별로 교육 지출에 대한 전망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핀란드는 0.6%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 반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6%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보고서와의 비교) 2024년 보고서의 교육 지출 전망치(2022~2070년 평균 GDP의 4%)는 이전 보고서의 전망 수준(동 기간 평균 GDP의 3.9%)보다 0.1%p 낮게 나타남
 - ▶ 이전 보고서보다 신규 전망치가 더 낮은 것은 기준연도(2022년)에 대한 두 전망 간의 차이에 기인

그림 8 2022~2070년 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율의 변화

(단위: %p)



자료: EC(2024)의 「2024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보고서와의 비교) 전반적으로 2022~2070년에 대하여 이전의 평균 GDP 대비 총 고령화비용 전망치보다 0.1%p 더 높게 나타남
 - ▶ 일부 국가들은 2021년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의 총 고령화비용이 전망된 반면,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전의 전망치보다 더 낮은 결과가 산출됨
 - ▶ 시기별로 보면, GDP 대비 총 고령화비용에 대한 이전 전망 결과보다 2030년까지 0.3%p, 2030년대에 0.2%p 더 낮게 전망된 반면, 2040년대에는 0.1%p 더 높게 전망되었고, 2050년대와 2060년대는 각각 0.2%p와 0.4%p 더 높게 전망됨
 -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보고서와 비교하여 중기적으로 보건 및 교육 지출에 대한 전망치 수준이 더 낮은 반면,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에 대한 전망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 소비세제 · 재산세제

김 효 경 · 고 은 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4839)

1. 개요

OECD가 발간한 「2023 Tax Policy Reforms」 보고서(2023.9.)는 OECD 회원국 등 75개국의 2023년¹⁾의 세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에서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Tax Policy Reforms 보고서는 국가별 조세정책 비교연구를 위해 거시경제 여건, 조세수입 트렌드, 세목별 세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OECD에서 조사대상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주요 제도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 동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인 75개국의 세제개편 동향에 대하여 3장으로 구분하여 서술
 - ▶ 1장에서는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등 세입여건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시경제 동향
 - ▶ 2장에서는 글로벌 세수동향 및 조세구조의 변화
 - ▶ 3장에서는 세목별 조세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 포함
 - ※세목 구분은 소득세제, 법인세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제, 환경관련 세제, 재산세제로 구분

이하에서는 동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소비세제와 재산세제 개편동향을 살펴보고자 함²⁾

2. 주요국의 소비세제 개편 동향

가. 소비세

2023년 소비세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 식료품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세부담 감면 조치와 건강 위해 상품에 대한 세부담 강화 조치가 시행

- 다수의 국가가 2021년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 및 대상 확대

1) 동 보고서는 2022년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포함

2)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편동향은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6호(2024.3.)을 참조

-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및 면세 확대
- OECD 외 국가를 중심으로 담배·주류·설탕 등의 제품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조정

부가가치세율의 개편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식료품 등 세율의 한시 인하 조치 중심

-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전기·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와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 ▶ (독일) 천연가스·지역난방에 대한 경감세율(7%)³⁾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시 적용
 - ▶ (아일랜드) 천연가스·전기에 대한 경감세율(6%)⁴⁾ 적용기한을 2023년 3월에서 10월로 연장
- 2022년 글로벌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가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추세
 - ▶ (스페인) 2023년 상반기 식료품의 경감세율(4%)을 영세율로 변경하고, 그 외 음료 등 식품의 경감세율(10%)은 2023년 말까지 5%로 인하
 - ▶ (불가리아) 2022년 7월~2023년 12월 기간 빵·밀가루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를 지속한 사례도 존재

- (독일, 네덜란드) 태양광 패널 매입 및 설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 (벨기에, 포르투갈) 태양열 난방 등을 위한 패널에 대해 벨기에는 2023년까지, 포르투갈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
- (아이슬란드) 2023년 말까지 전기·수소차 부가가치세 면세액의 한도를 폐지

일부 국가는 담배·가당음료 등 건강 위해 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사례

- (불가리아) 2023~2026년 단계적으로 담배소비세율을 평균 50% 인상할 계획 발표
- (콜롬비아)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한편 소금·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되 2025년까지 20% 인상할 예정
- (캐나다) 국내산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 및 저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 비과세 조치를 철회

3) 2023년 독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9%

4) 2023년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3%

나. 환경관련 세제

단기적으로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가계·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들이 지속

- 독일, 이탈리아, 우리나라 등은 천연가스, 화석연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 ▶ (독일, 이탈리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
 - ▶ (오스트리아)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80% 인하
 - ▶ (에스토니아) 천연가스·디젤 세율을 20% 인하
 - ▶ (이스라엘) 석탄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디젤·가솔린에 대한 세율을 2021년 20%, 2023년 15% 인하
 - ▶ (한국) 유류세율을 2022년 5월 30%, 7월 37% 인하한 데 이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휘발유 세율은 25%, 경유·LPG 세율은 37% 인하하였으며, 2024년 7~8월 기간에는 인하율을 휘발유 20% 및 경유·LPG 30%로 조정하여 적용할 예정
 - ▶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류세 물가연동을 유예
- 일부 국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전기 소비에 대한 세율을 인하
 - ▶ (독일) 2023년까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분야에 대해 세금 환급 적용
 - ▶ (덴마크) 에너지 녹색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전기 과세를 순차적으로 인하할 예정
 - ▶ (네덜란드) 현행 세율 체계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 완화 예정

한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및 탄소세(carbon tax) 등 탄소가격제도를 시행하거나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세제개편도 지속됨

-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저탄소 소비를 유인하는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일부 고소득 국가는 장기간 운영하였던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유를 촉진하는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
-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책정 매커니즘을 신설·확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탄소가격제도의 적용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2018년 32%에서 2021년 40%로 상승하는 추세
 - ▶ OECD가 2018~2021년 71개국의 실질 탄소가격(net effective carbon rates)⁵⁾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부문별 실효세율은 도로부문이 산업·전력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농어업 부문의 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실질 탄소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오스트리아·덴마크 등은 2022년 이후 종전 대비 확대된 수준의 탄소가격제도를 추진할 예정

- (오스트리아) 유럽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별도로 자국의 ETS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2년 이산화탄소 톤당 30유로, 2025년까지 55유로의 가격을 부과할 예정

5)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종량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문진영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덴마크) 탄소가격 수준을 상향하여 전 산업에 동일한 가격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톤당 100유로의 가격을 부과할 예정
- (인도네시아) 반면, 인도네시아는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탄소세 도입을 연기할 것으로 발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 관련 법안에 대해 유럽연합 이사회가 승인⁶⁾함에 따라 2023년 5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0월~2025년 12월 전환기간(transitional phase)에 돌입

- 탄소국경제도는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EU의 제조 사업장이 탈탄소화 규제 정책이 약한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책
 -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탄소누출의 위험이 높은 6개 업종이 대상
- 2023년 10월~2025년 12월 CBAM 전환기간에는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의 배출량 신고를 이행하는 등 CBAM 전면시행 기간에 앞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시행
 - ▶ 전환기간에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
- 2026년 CBAM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는 직전년도 수입 제품의 총량과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검증 의무가 추가되고 과징금 적용 수준이 강화될 예정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EU-ETS는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나 수입에 취약한 업종에 대해 일정 수량의 무상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CBAM 이후 2026~2034년 기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될 예정

표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주요 차이점

구분		전환기간 (2023.10.1.~2025.12.31.)	확정기간 (2026.1.1.-)
의무 사항	보고 의무	CBAM 보고서 제출 (배출량 산정 결과만 포함)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제출 (배출량 산정 결과도 포함)
	검증	검증 불필요 (의무 아님, 자발적 검증 가능)	현장검증(연 1회) 및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
보고 주기		분기별 보고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연 1회 보고 (차년도 5월 31일까지)
과징금		배출량 미보고 시 부과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부과

자료: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알기쉽게 풀어쓰는 CBAM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2023.12.27.

- 이와 별도로 ‘Fit for 55’ 패키지에 따라 2027년 이후에는 현행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 및 난방 연료 등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ETS 2)가 도입될 예정이며,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ETS 2의 영향을 받게 될 저소득가구 지원에 활용할 계획

6)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3년 4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도기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절감하기 위한 ‘Fit for 55’ 패키지 관련 5개 법안(EU 탄소배출권 거래 지침 개정안, 해상운송 온실가스배출규제규정 개정안, ETS 항공운송 지침 개정안, 사회기후기금 설립 규정,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도입 규정 등)을 승인(출처: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ETS 개편, CBAM 도입 등 중요 기후 법안 최종 승인”, 2023.4.26.)

캐나다·노르웨이 등이 탄소세율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콜롬비아는 과세 대상에 석탄을 포함

-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캐나다는 2022년 25% 인상(CAD50, 이하 이산화탄소 톤당)한 데 이어 2023년 35%(CAD65) 인상할 예정이며, 아일랜드는 2022년 22% 인상(EUR41), 노르웨이는 2022년 21% 인상(NOK761)
 ▶ (싱가포르) 2024년부터 세율을 인상하여 2026년(SGD45), 2030년(SGD50-8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탄소세 과세대상에 석탄을 포함하고, 2025년 기존 탄소세율의 25% 수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2028년 100% 과세할 계획 발표
- (영국) 전력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탄소가격 하한 수준을 유지를 적용해 왔던 탄소가격지원요율(carbon price support rate)⁷⁾을 8년 간 동결

표 2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제 변화

	세율 인상 / 과세범위 확대		세율 인하 / 과세범위 축소	
	2021년	2022년 이후	2021년	2022년 이후
연료, 특정 부문				
농업	스웨덴	프랑스 ⁴ , 네덜란드		스웨덴 ¹
난방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² , 네덜란드	핀란드 ¹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교통	핀란드 ² , 영국		체코, 슬로베니아 ²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연료, 모든 부문	알바니아, 라트비아 ² , 네덜란드	덴마크 ³ , 영국, 저지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¹ , 불가리아, 독일 ¹ , 에스토니아 ¹ , 아일랜드 ¹ , 이스라엘 ¹ , 이탈리아 ¹ , 네덜란드 ¹ , 스웨덴, 우크라이나 ¹ , 남아프리카 공화국 ¹
탄소세	안도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³	안도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³		영국, 스웨덴
전기 소비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¹ , 네덜란드
부가가치세 (일반소비세)				이탈리아, 폴란드

주: 1. 한시적 조치
 2. 바이오연료 관련 세금
 3. 물가연동 세제
 4. 이연된 정책 프랑스의 비 도로 디젤 연료에 대한 조세지출은 산업 및 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림 부문의 기업들에게 접근 가능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7) 배출권거래제 탄소가격 하한제도가 2013년 도입되면서 이전까지 기후변화부담금 면제 대상이었던 발전과 열병합 화석연료에 적용하게 된 세율로, 적정수준의 배출권 가격(탄소하한가격)을 추정하고 목표 가격과 실제 배출권 가격(시장가격) 간의 차이를 탄소가격지원요율로 산정한 뒤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기후변화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출처: 정재현 외, 「주요국의 친환경적 세제개편 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21-03, 2021.9.)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의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센티브 대상 및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편도 시행

- OECD 국가 중 약 2/3가 전기(EVs) 또는 하이브리드(HEVs) 차량에 대해 세금 환급·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기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하였던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혜택이 유지되는 추세이며, 일부는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세제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상을 변경하는 조치도 시행
 -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요건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USD 7500, 소득상한 존재)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
 - ▶ (스웨덴) 저배출 차량의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SEK70000)을 지급하고 고배출 차량의 보유에 추가적으로 과세하였던 기후 보너스(climate bonus) 제도를 폐지
 - ▶ (아이슬란드) 세수 확보를 위해 전기 차량을 포함한 신규 차량 취득 시 개별소비세 최저한세(5%)를 신설하고 차량 보유세도 2배 인상
- 그 외 많은 국가는 수입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활용한 전기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하거나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 (중국) 2023년까지 전기 차량 구매 시 과세 면제
 - ▶ (남아프리카 공화국) 차량 공해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것을 발표
 - ▶ (모리셔스, 태국)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입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 ▶ (튀니지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
-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담금 등을 인상한 국가도 존재
 - ▶ (덴마크) 2025년부터 트럭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에 따라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담금(CO₂-differentiated kilometre-based road pricing)을 매길 계획

표 3 차량 및 운송에 대한 세제 변화

	세율 인상 / 과세범위 확대		세율 인하 / 과세범위 축소	
	2021년	2022년 이후	2021년	2022년 이후
도로 수송용				
개별소비세,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본 ^t , 튀르키예	모리셔스 ^{EV} , 태국 ^{EV} , 우크라이나 ^t , 르완다 ^{EV}	캐나다, 아이슬란드, 세인트루시아 ^t ,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록세		일본 ^t	독일, 아일랜드 ^{EV} , 노르웨이 ^{EV}	저지섬,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동차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체코 ^t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EV}
도로 이용세		네덜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전기 차량에 대한 개인소득세 · 법인세 감면, 보조금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EV}
항공 수송용				
항공권 과세	독일 ^a	독일 ^a , 영국 ^{EV}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주: a. 기 발표된 제도

t. 한시적 조치

EV.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 법인세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는 인센티브 및 보조금 인상을 가리킴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3. 주요국의 재산세제 개편 동향

2023년 주요국의 재산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세수 확대, 주택가격 문제 해결,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재산세제를 강화한 국가가 많았으며, 일부 국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재산세제를 완화

- 다수의 국가에서 재산세율 인상 및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강화,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한 재산세제 강화정책 시행
-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감면 조치 확대, 부동산 최초 취득에 대한 거래세 면제 확대 등을 통한 재산세제 완화정책 시행

표 4 주요 국가의 세목별 재산세제 개편 방향

구 분	세율 인상/과세범위 확대	세율 인하/과세범위 축소
보유세(부동산)	캐나다 ¹⁾ , 싱가포르, 칠레,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영국, 캐나다 ¹⁾ , 바베이도스
거래세(동산 및 부동산)	캐나다 ¹⁾ , 네덜란드, 미국, 포르투갈, 칠레, 인도네시아, 저지섬, 튀니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포르투갈
상속세 및 증여세	네덜란드, 칠레	그리스, 폴란드
부유세	스페인, 노르웨이,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주: 1) 캐나다는 주별로 재산세제를 운영하므로 주에 따라 재산세제 개편 동향이 다를 수 있음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2023.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보유세

캐나다,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은 세수 확보 및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 및 빈집세 확대 등 보유세 강화

-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상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및 알버타 주는 2022~2023년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교육세분 재산세율⁸⁾ 인상
 - ▶ (싱가포르) 연간 가치가 3만 싱가포르달러⁹⁾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을 2년에 걸쳐 최소 2%p, 최대 16%p 인상¹⁰⁾
 - ▶ (칠레) 시장가치 150만달러¹¹⁾ 초과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추가세율 인상(0.275% → 0.425%)
-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 등에 대한 빈집세 확대
 - ▶ (포르투갈) 비어있는 노후화된 건물, 수요 많은 지역의 주거 건축물용 토지, 1년 이상 비어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증과세율 확대
 - ▶ (아일랜드) 12개월 내 30일 미만 거주한 주택에 대해 기본 재산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빈집세 도입
- 재산세 과세 기간 연장
 - ▶ (덴마크)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1%p(4% → 3%) 인하함으로써 건물의 감가상각 기간 연장

영국 및 캐나다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감면을 확대 등 보유세 완화

-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일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감면 시행
 - ▶ (영국) 상업용 부동산(소매, 숙박, 레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50% → 75%, 감면한도 11만파운드¹²⁾)
 - ▶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 경우 2022년 4월 시행한 재산세율 인하 정책을 유지

8) 캐나다의 재산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내 공립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세분 재산세와 그 외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분 재산세로 구성됨. 주로 기초지방정부인 시(city)에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나 일부 주정부에서는 교육세분 재산세를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징수하기도 함

9) 원화 기준 약 3,070만원(2024.6.4. 기준) 수준

10) 연간 가치가 3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은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 2022년 4~16%에서 2023년 5~23%, 2024년 6~32%로 인상하며,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2022년 10~20%에서 2023년 11~27%, 2024년 12~36%로 인상할 예정

11) 원화 기준 약 20억 6,000만원(2024.6.4. 기준) 수준

12) 원화 기준 약 1억 9,400만원(2024.6.4. 기준) 수준

그림 1 최근 10년(2014~2023년)간 영국의 주택 가격 추이

(단위: %)



주: 주택가격(영국)의 전년동기 대비 변동률을 의미
 자료: BIS Data portal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래세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세수 확보 및 부동산 투기 제한 등을 위해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등 거래세 강화

-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증과세율 적용
 - ▶ (네덜란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율 2.4%p 인상(8% → 10.4%)
 -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율 5%p 인상(15% → 20%) 및 세부담 가중 범위를 토론토 등 일부 지역에서 주 전체로 확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 인하 시행 등 거래세 완화

- 부동산 등 자산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부동산 비과세 확대 등
 - ▶ (영국)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인 주택가액 기준 완화(30만파운드 → 42.5만파운드)¹³⁾
 - ▶ (사우디아라비아) 법인간 또는 개인-법인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거래세(거래가액의 5%) 면제

다. 상속세 및 증여세

칠레, 네덜란드 등은 세수 확보 및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과세대상 확대 및 인적공제 축소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

13) 완화 기준 약 5억 3,000만원 / 7억 5,000만원(2024.6.4. 기준) 수준

14) 2022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상속세 과세대상 확대
 - ▶ (칠레) 상속세 과세 대상에 생명 보험 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추가
- 증여세 인적공제 축소
 - ▶ (네덜란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자녀 인적공제를 2년에 걸쳐 폐지(2022년 106,671유로, 2023년 28,947유로¹⁵⁾, 2024년 폐지)

그리스, 폴란드 등은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 상속세 면제 확대 및 증여세 비과세 확대 등
 - ▶ (그리스) 그리스 은행이나 외국은행의 공동 계좌에 보유된 현금 예금 및 기타 금융 상품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 확대, 최소 10년간 외국에 거주한 그리스 국민이 소유했던 해외 동산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 (폴란드) 2022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라. 부유세(net wealth tax)

부유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부(純富)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제로, 일부 국가에서 재산 보유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도입 및 확대

- (스페인) 기존 부유세에 추가적으로 300만 유로¹⁶⁾를 초과하는 고액 순자산에 대한 연대세(solidarity tax) 도입
 - ▶ 70만 유로¹⁷⁾ 초과 순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기존 부유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
 - ▶ 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1.7~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2~2023년 과세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
- (노르웨이)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부유세 세율 0.05%p 인상(0.25% → 0.3%)
- (콜롬비아) 72,000UVT¹⁸⁾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0.5%~1.5%의 부유세 영구 도입
 - ▶ 다만, 최고세율인 1.5%는 2023~2026년에만 적용되며, 2027년 이후 최고세율은 1.0%로 조정
- (칠레) 특정 사치품(요트, 자동차, 헬리콥터 등)에 대해 2%의 부유세 영구 도입

15) 원화 기준 약 1억 6,000만원 / 4,300만원(2024.6.4. 기준) 수준

16) 원화 기준 약 45억원(2024.6.4. 기준) 수준

17) 원화 기준 약 10억 5,000만원(2024.6.4. 기준) 수준

18) UVT(Unidad de valor tributario)란 콜롬비아의 세금 책정 단위를 의미하며 매년 기준 단위가 달라짐. 2024년 기준 1UVT=47,065콜롬비아페소이며, 72,000UVT는 원화 기준 약 12억원(2024.6.4. 기준) 수준

[참고] 주요국의 부유세 운용 현황

- 2024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부유세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콜롬비아 등 일부
 - 노르웨이는 개인 기준 170만 크로네(부부의 경우 340만 크로네)¹⁹⁾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합산 최대 1.1%의 부유세 과세
 - (중앙정부) 개인 순자산 170만 크로네(부부의 경우 340만 크로네) 초과 시 0.3%, 2,000만 크로네 초과 시 0.4% 세율 적용
 - (지방정부) 개인 순자산 170만 크로네(부부의 경우 340만 크로네) 초과 시 지방정부별로 0.3~0.7% 세율 적용
 - 스페인은 70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0.2~3.5%의 부유세를 과세하며, 2022년 이후 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 순자산에 대한 연대세를 추가 도입
 - 스위스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전세계(worldwide) 순자산에 대해 주 정부(칸톤)에서 부유세를 과세
 - 취리히 주의 경우, 주 정부에서 개인 순자산 7.7만 프랑(부부의 경우 15.4만 프랑)²⁰⁾ 초과 시 0.05~0.30%의 부유세를 과세하며, 주 내 지방정부(취리히 시 등)에서 부유세 세율의 0.72~1.3을 곱한 지방세를 추가로 과세
 - 콜롬비아는 72,000UVT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0.5~1.5%의 부유세 과세
 - 72,000UVT 초과 / 122,000UVT 초과 / 239,000UVT 초과 순자산에 대해 0.5% / 1.0% / 1.5% 세율 적용
- 과거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도 부유세를 운용하였으나, 납세 대상자들이 국적을 변경하는 등 자본이 다른 국가로 이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유세를 폐지함
-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에서 부유세를 운용

19) 원화 기준 약 2억 2,000만원 / 4억 5,000만원(2024.6.4. 기준) 수준

20) 원화 기준 약 1억 2,000만원 / 2억 4,000만원(2024.6.4. 기준) 수준

재정추계&세제 이슈

재정추계&세제 이슈 및 분석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21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분석 및 시사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추계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신헌태 · 박정환 ·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4835, 4655)

1.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법률은 920건이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0.5%인 28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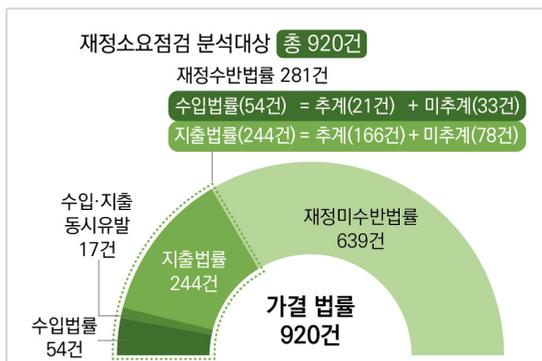
-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85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¹⁾, 수입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은 21건, 지출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은 166건

표 1 2023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		
	소계	수입법률	지출법률
920	281 ¹⁾ (185)	54 (21)	244 (166)

주: 1)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17건 포함
 1. ()안은 추계가 곤란한 96건을 제외하고 재정소요를 점검한 가결 법률 건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2023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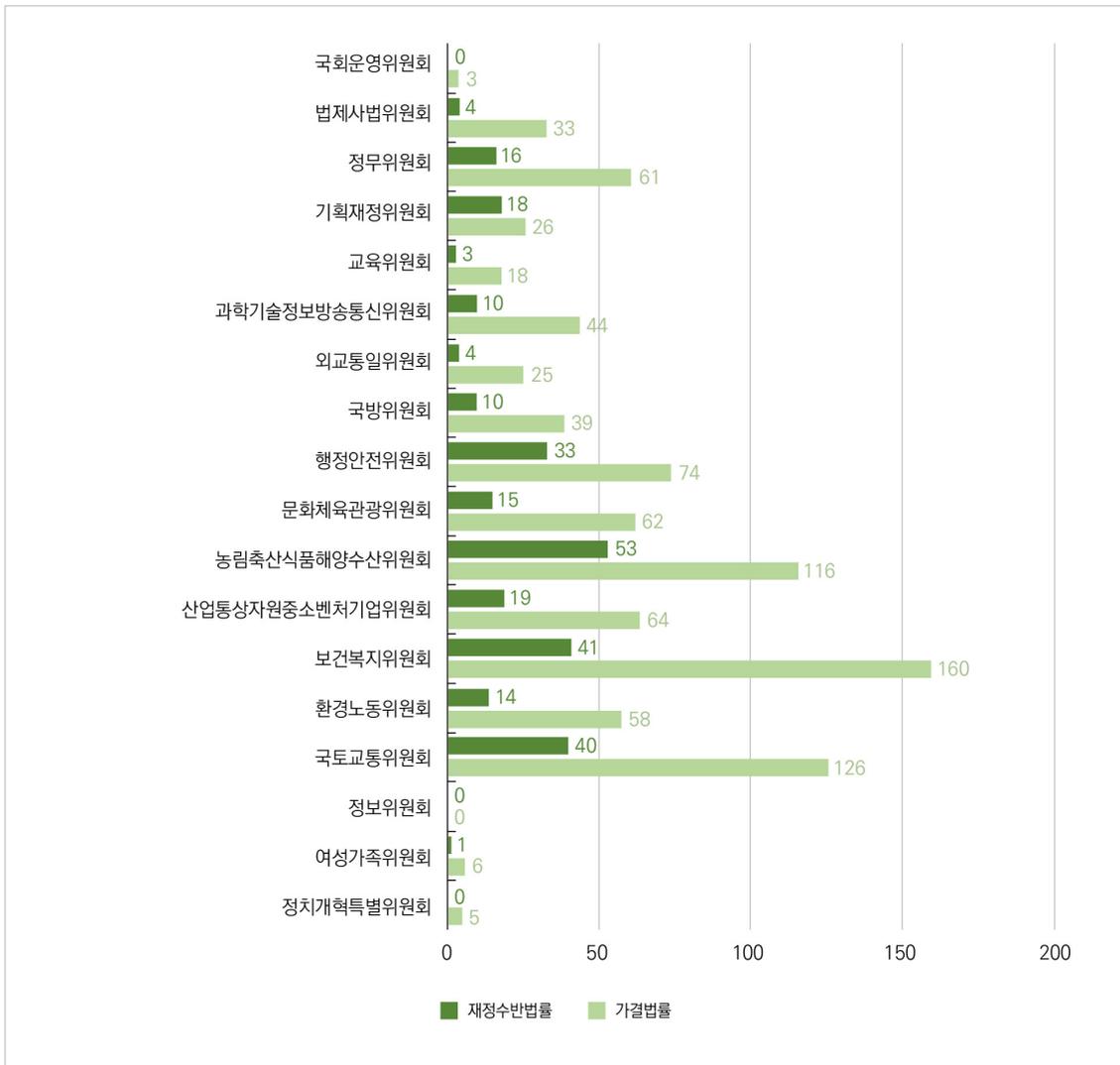


- (위원회별) 2023년 재정수반법률 건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3건), 보건복지위원회(41건), 국토교통위원회(40건) 순
 ▶ 가결 법률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60건), 국토교통위원회(12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16건) 순

1)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96건의 법률을 제외하고 재정변화를 분석하였음

그림 2 2023년 위원회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이하에서는 2023년 가결 법률을 수입법률과 지출법률로 구분하여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

2.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점검 결과 개요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의 상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효과의 큰 비중,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7,918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조세지출 등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연평균 7조 993억원)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연평균 6조 3,075억원)와 상쇄된 결과
- 2023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의 의결이 2월과 12월에 각각 두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등 예년에 비해 지방세 관련 수입법률로 인한 세수효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2023년 개정 조세 관련 법률은 출산·자녀양육과 첨단기술에 대한 기업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내용상 특징을 보임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21건의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 영향에서 적용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적용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 9,880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수입법률별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법인세법」 등에서 수입 증가 예상

표 2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제외

(단위: 억원)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수입	국세수입	조세특례제한법	-76,973	-15,395
		부가가치세법	-	-
		농어촌특별세법	-	-
		법인세법	5,286	1,057
		기타 ¹⁾	-6,616	-1,323
	지방세수입	지방세특례제한법	-7,474	-1,495
		지방세법	-24,027	-4,805
	소계		-109,803	-21,961
국세외수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²⁾	-6	-1	
합 계			-109,809	-21,962

주: 1) 국세수입의 기타에는 연평균 1,000억원 이하의 10개 수입법률을 포함
 2) 국세외수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수입법률을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표 3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총액기준

(단위: 억원)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수입	국세수입	조세특례제한법	-235,939	-47,188
		부가가치세법	-28,803	-5,761
		농어촌특별세법	315,376	63,075
		법인세법	5,286	1,057
		기타 ¹⁾	-7,978	-1,595
	지방세수입	지방세특례제한법	-159,452	-31,890
		지방세법	-37,884	-7,577
	소계		-149,394	-29,879
국세외수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²⁾	-6	-1	
합 계			-149,400	-29,880

주: 1) 국세수입의 기타에는 연평균 1,000억원 이하의 10개 수입법률을 포함
 2) 국세외수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수입법률을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나.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내용

(1)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 효과의 상세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경우,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7,918억원으로 예년 대비 작은 규모로 예상²⁾되는데, 이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상쇄된 것에 기인

- 적용기한 연장 효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2024~2028년간 연평균 7,918억원)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연평균 7조 993억원)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연평균 6조 3,075억원)가 복합적으로 작용

표 4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단위: 억원)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수입	적용기한 연장 효과	조세지출 등 적용기한 연장 효과 (세수감소 효과)	-354,967	-70,993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효과 (세수증가 효과)	315,376	63,075
		소계	-39,591	-7,918
	그 외 세법개정 효과 ¹⁾		-109,803	-21,961
조세수입 계			-149,394	-29,879
국세외수입			-6	-1
합 계			-149,400	-29,880

주: 1) 그 외 세법개정 효과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등 적용기한 연장 외의 세법개정 사항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 지방세 관련 법률의 두 차례 의결

2023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의 의결이 2월과 12월에 각각 두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등 예년에 비해 지방세 관련 수입법률로 인한 세수효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2023년 시행 지방세 관련 법률이 2023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2022년 개정 수입법률에는 지방세 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2023년 개정 수입법률에서 지방세 관련 법안의 재정수반요인 비중이 큼

2)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당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는 2023~2027년간 연평균 3조 5,123억원 수준

표 5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 관련 법률

(단위: 억원)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023년 2월 개정	「지방세법」	-24,027	-4,805
	「지방세특례제한법」	-28,928 (-6,017)	-5,786 (-1,203)
	2023년 2월 개정 계 (A)	-52,955 (-30,044)	-10,591 (-6,008)
2023년 12월 개정	「지방세법」	-13,857 (0)	-2,771 (0)
	「지방세특례제한법」	-130,524 (-1,457)	-26,105 (-291)
	2023년 12월 개정 계 (B)	-144,381 (-1,457)	-28,876 (-291)
지방세 관련 법률 ¹⁾ 계 (A+B)		-197,336 (-31,501)	-39,467 (-6,300)
조세수입 계		-149,394 (-109,803)	-29,879 (-21,961)

주: 1) 지방세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의미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 출산·양육 및 첨단기술 투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2023년 가결된 세법의 경우, 출산·양육 및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개정
-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상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가가치세, 주세 감면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표 6 2023년 개정 조세 관련 수입법률의 주요 목적별 개정사항

특징	주요 개정사항
출산·자녀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등
첨단기술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범위 및 공제를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고물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 생맥주 주세를 한시경감 적용기한 연장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점검 결과 개요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0조 3,668억원의 의무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지원으로 연평균 8조 8,451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으로 연평균 1조 5,218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2023년 제·개정된 대구경북신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관련 및 미끄럼 구간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26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2023년 개정된 출생아·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87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023년 가결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166건의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 영향에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11조 3,401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 시 보건 분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나, 연장 효과 제외 시는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농림수산 순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

표 7 2023년 제·개정 지출법을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효기간 연장 효과 등 제외

(단위: 억원, %)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비중
일반·지방행정	1,708	342	3.7
공공질서 및 안전	878	176	1.9
통일·외교	109	22	0.2
국방	612	122	1.3
교육	31	6	0.1
문화 및 관광	396	79	0.9
환경	1,997	399	4.4
사회복지	8,896	1,779	19.5
보건	3,255	651	7.1
농림수산	7,851	1,570	17.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61	372	4.1
교통 및 물류	17,135	3,427	37.6
통신	436	87	1.0
국토 및 지역개발	400	80	0.9
과학기술	6	1	0.01
합 계	45,573	9,115	100.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표 8 2023년 제·개정 지출법을 재정소요점검 결과: 총액기준

(단위: 억원, %)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비중
일반·지방행정	2,238	448	0.4
공공질서 및 안전	878	176	0.2
통일·외교	109	22	0.02
국방	612	122	0.1
교육	31	6	0.01
문화 및 관광	396	79	0.1
환경	1,999	400	0.4
사회복지	8,896	1,779	1.6
보건	521,596	104,319	92.0
농림수산	8,011	1,602	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21	824	0.7
교통 및 물류	17,135	3,427	3.0
통신	436	87	0.1
국토 및 지역개발	537	107	0.1
과학기술	6	1	0.001
합 계	567,003	113,401	100.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나.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내용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전체 지출 변화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으로 연평균 10조 3,668 억원(일반회계 8조 8,451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5,21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의 연장은 의무지출 증가 효과로 이에 따른 지출 증가 효과의 크기는 점검대상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지출 변동의 91.4%를 차지

표 9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단위: 억원, %)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비중	
의무지출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효과	일반회계(「국민건강보험법」)	442,253	88,451	78.0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법」)	76,088	15,218	13.4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효과 소계	518,341	103,668	91.4
	그 외 의무지출 변화 효과	677	135	0.1	
	의무지출 소계	519,018	103,804	91.5	
재량지출		47,984	9,597	8.5	
합 계		567,003	113,401	100.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신공항 추진과 미끄럼 도로 구간 등에 배수 및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통한 도로 정비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용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및 협의기구를 설치·운영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
- (도로법)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

표 10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

(단위: 억원)

법률 (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23.4.13.)	13,678	2,73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2023.10.6.)	1,802	360
도로법 (2023.12.8.)	843	169
합 계	16,323	3,26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과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 완화를 통한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100만원을 추가 지급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

표 11 2023년 개정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

(단위: 억원)

법률 (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23.12.8.)	4,816	96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3.12.8.)	2,016	4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2.27.)	2,537	507
합 계	9,369	1,87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부록] 2023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

(단위: 억원)

수입 지출	의안 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수입	2120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등)	-28,928	-5,786
	2120250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24,027	-4,805
	2120969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40,416	-8,083
	2124153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5,286	1,057
	2125696	「소득세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3,096	-619
	21256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3,528	-706
	2125698	「부가가치세법」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연장 등)	-28,803	-5,761
	2125699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315,376	63,075
	2125700	「조세특례제한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195,523	-39,105
	2125990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13,857	-2,771
212599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130,524	-26,105	
지출	21202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필수예방접종)	2,537	507
	212133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13,678	2,736
	2122111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유효기간 연장)	442,253	88,451
	2122117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유효기간 연장)	76,088	15,218
	21251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4,816	963

주: 1. 2024~2028년 합계 500억원 이상의 재정변동이 예상되는 법률 제시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제21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장 설 희 · 어 수 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6, 4745)

1. 제21대 국회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현황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은 총 1,638건이며, 이 중 53.5%인 876건의 법률안이 가결됨

- 의원발의안은 총 1,568건(95.7%), 정부제출안은 70건(4.3%)으로 의원발의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다만, 정부제출안은 하나의 세법개정안에 다수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의원발의안과 그 건수를 단순 비교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의원발의안의 가결률은 51.5%(총 1,568건 중 807건 가결)인 반면, 정부제출안의 가결률은 98.6%(총 70건 중 69건 가결)로 정부제출안의 가결률이 의원발의안에 비해 높으며, 가결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안반영폐기¹⁾ 비율이 의원발의안 66.9%, 정부제출안 52.2%로 가장 높음
 - ▶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정부제출안에 포함된 개정사항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을 함께 심사하여 각 법률안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가결하거나,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원안 그대로 가결하여 정부제출안 대부분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남

표 1 제21대 국회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가결 현황

구 분	의원발의안	정부제출안	합 계
발의건수(A)	1,568	70	1,638
비중	95.7	4.3	100.0
가결건수(B)	807	69	876
대안반영폐기	540 (66.9)	36 (52.2)	576 (65.8)
수정반영폐기 ¹⁾	219 (27.1)	2 (2.9)	221 (25.2)
수정가결	4 (0.5)	20 (29.0)	24 (2.7)
원안가결	44 (5.5)	11 (15.9)	55 (6.3)
가결률(B/A)	51.5	98.6	53.5

주: 1) 수정반영폐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본회의의 수정안의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어 폐기하기로 한 법률안을 의미함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가결 법률안 수 대비 가결 형태별 법률안 수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참고] 제19대 국회 및 제20대 국회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가결 현황

-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 건수는 제19대 국회 기준 총 891건, 제20대 국회 기준 총 1,296건으로, 제21대 국회(총 1,638건)까지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음
 - 정부제출안은 소폭 증가한 데 그쳤으나[제19대 57건 → 제20대 62건(+5건) → 제21대 70건(+8건)], 의원발의안이 큰 폭으로 증가함[제19대 834건 → 제20대 1,234건(+400건) → 제21대 1,568건(+334건)]
- 가결률은 제19대 국회 기준 30.5%, 제20대 국회 기준 53.8%로 크게 증가한 후, 제21대 국회에서는 유사한 수준(53.5%)으로 유지됨
 - 특히, 의원발의안의 가결률이 제19대 국회(26.5%) 대비 제20대 국회(52.1%), 제21대 국회(51.5%)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함

■ 제19대 국회 및 제20대 국회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가결 현황 ■

(단위: 건, %)

구 분	제19대 국회(2012.5.30.~2016.5.29.)			제20대 국회(2016.5.30.~2020.5.29.)		
	의원발의안	정부제출안	합 계	의원발의안	정부제출안	합 계
발의건수(A)	834	57	891	1,234	62	1,296
비중	93.6	6.4	100.0	95.2	4.8	100.0
가결건수(B)	221	51	272	643	54	697
대안반영폐기	213 (96.4)	30 (58.8)	243 (89.3)	589 (91.6)	36 (66.7)	625 (89.7)
수정안반영폐기	-	-	-	39 (6.1)	0 (0.0)	39 (5.6)
수정가결	8 (3.6)	12 (23.5)	20 (7.4)	14 (2.2)	7 (13.0)	21 (3.0)
원안가결	0 (0.0)	9 (17.6)	9 (3.3)	1 (0.2)	11 (20.4)	12 (1.7)
가결률(B/A)	26.5	89.5	30.5	52.1	87.1	53.8

주: 1) 수정안반영폐기는 제20대 국회부터 도입된 제도이기에 제19대 국회까지는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가결 법률안 수 대비 가결 형태별 법률안 수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제21대 국회 가결된 법률의 특징

이하에서는 가결(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된 법률에 포함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책목표,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음²⁾

- 정책목표는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의 각 법률안별 제안이유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 중 격차해소, 경제성장, 국민생활안정, 인구구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 격차해소는 소득·자산 격차 완화, 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간 균형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의미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 해당됨
 - ▶ 경제성장은 연구개발, 투자촉진,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의미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해당됨
 - ▶ 국민생활안정은 주거안정, 저축지원, 필요경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의미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해당됨
 - ▶ 인구구조는 출산·육아 지원, 노인·노후생활보장 지원, 청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의미하며,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조정, 퇴직소득 소득세 면제기간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등이 해당됨

표 2 정책목표 소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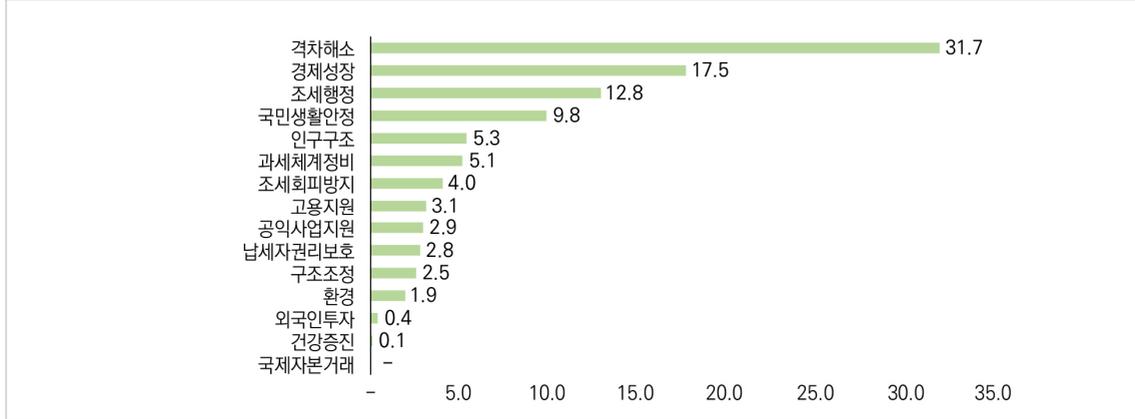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격차해소	소득격차, 자산격차, 대/중소기업, 지역간 균형, 기타	경제성장	연구개발, 투자촉진, 산업진흥, 기타
국민생활안정	주거안정, 저축지원, 필요경비 지원, 기타	인구구조	출산·육아 지원, 노인·노후생활보장 지원, 청년 지원

2) 대안반영폐기·수정안반영폐기된 법률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최종적으로 대안·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였음

가. 정책목표

-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① 격차해소, ② 경제성장, ③ 국민생활안정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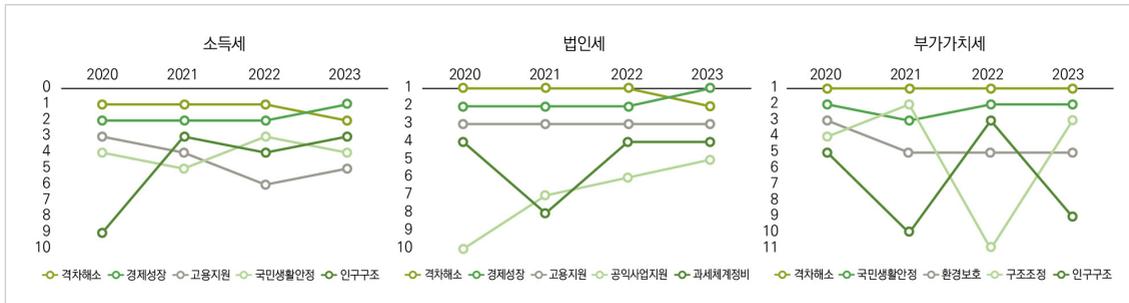
그림 1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의 정책목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세목별로도 연도별 정책목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격차해소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 정책목표는 세목별로 차이가 있음

그림 2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의 세목별 정책목표 순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정책대상

-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의 정책대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책목표 중 ‘격차해소’에 우선순위를 줌에 따라 개인 및 기업 전체, 기타 등을 제외하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표 3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의 정책대상

(단위: %)

정책대상	2020		2021		2022		2023		합계	
	비중	순위								
기업: 대기업	0.2	9	0.4	11	1.5	8	0.4	10	0.7	10
기업: 중견기업	4.0	6	4.8	6	4.2	6	3.6	7	4.2	6
기업: 중소기업	7.1	5	11.0	4	6.5	5	6.6	5	7.8	5
기업: 전체	24.5	2	27.5	1	28.1	2	30.1	1	27.6	1
개인: 저소득층	15.3	4	5.8	5	12.6	4	10.0	4	10.9	4
개인: 고소득층	1.6	7	2.7	8	2.9	7	1.1	9	2.1	8
개인: 청년/노인/여성	0.2	9	3.3	7	1.0	10	3.8	6	2.1	7
개인: 전체	27.3	1	23.8	2	28.6	1	23.5	2	25.8	2
공공부문	1.4	8	1.0	9	0.4	9	1.5	8	1.1	9
지방자치단체	0.2	9	0.8	10	-	11	-	11	0.3	11
기타	18.1	3	18.8	3	14.3	3	19.2	3	17.5	3
합계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의 정책대상별 정책목표 순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격차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표 4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의 정책대상별 정책목표

정책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기업: 대기업	경제성장	과세체계 정비	조세회피 방지
기업: 중견기업	고용지원	경제성장	격차해소
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고용지원	경제성장
기업: 전체	경제성장	격차해소	구조조정
개인: 저소득층	격차해소	국민생활안정	납세자 권리보호
개인: 고소득층	국민생활안정	조세회피 방지	격차해소
개인: 청년/노인/여성	인구구조	국민생활안정	과세체계 정비
개인: 전체	격차해소	경제성장	국민생활안정
공공부문	조세행정	공익사업지원	격차해소
지방자치단체	격차해소	조세행정	-
기타	조세행정	격차해소	조세회피 방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제21대 국회 가결된 법률의 세제별 주요내용

가. 소득세제

소득세 분야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 및 가상자산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가 과세시기 유예 등을 통하여 완화하였으며,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 및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1) 2020년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급여수준별 기본공제한도 한시적 상향
 - ▶ 2020년 3~7월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에 따라 총급여규모별(~7천만원/7천만원~1.2억원/1.2억원~) 공제한도도 200/250/300만원에서 230/280/330만원으로 2020년에 한하여 상향조정
-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율(기존 2주택/3주택 이상 10/20%p)을 10%p씩 인상하고,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 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 시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신설
 - ▶ 과세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하고, 금융투자상품 내에서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신설
 - ▶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2) 2021년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상향
 -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별 2,000/3,000/3,600만원에서 2,200/3,200/3,800만원으로 200만원씩 인상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인상
 -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소득 과세 1년 유예
 - ▶ 가상자산소득 과세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

(3) 2022년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별 150/260/300만원에서 165/285/330만원으로 인상
-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 ▶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령 및 소득과 무관하게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아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배제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4) 2023년

-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대상 월세지출액 한도를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나. 법인세제

법인세 분야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공제율을 신설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1) 2020년

-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 ▶ 기존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하여 재설계하고 공제수준 상향
 -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전기업 3%)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기본공제 2%p 우대
- 기업 재무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유통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인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는 경우 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2) 2021년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
 - ▶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R&D 비용에 대해서는 10%p,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3~4%p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1년 말→2024년 말)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적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1년 말→2024년 말)
 - ▶ 비수도권의 취업 취약계층인 우대공제 대상(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1인당 공제금액을 2년간 한시 상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 ▶ 창업 중소기업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생계형 창업의 연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연간 8,000만원 이하로 완화

(3) 2022년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경
 - ▶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 체계를 유지하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인하

표 5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변경 내역

과세표준	세 율	
	증 전	개 정
2억원 이하	10%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 ▶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증전 6%에서 8%로 상향
 - ▶ 중견기업: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 공제율을 5%에서 6%로 상향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고용 관련 4개의 개별 세액공제(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료)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4) 2023년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 일반기술 1/5/10% → 3/7/12%
 - 신성장·원천기술 3/6/12% → 6/10/18%
 - (추가공제율)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국가전략기술 4% → 10%

- 국가전략기술 범위 및 세액공제율 확대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 16%→25%,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8%→15%로 상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2~5%p 확대 및 추가공제율(10~15%) 신설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년 100%+2년 50%)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다. 소비세제

소비세 분야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확대·신설하며, 지방분권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됨

(1) 2020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각종 공제·감면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2) 2021년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로 단계적 인상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 ▶ 교통시설 확충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로 3년 연장

- 각종 공제·감면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세액공제 신설
 -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3) 2022년

- 맥주·탁주 주세율 변경
 - ▶ 맥주·탁주의 주세 세율 계산식에 가격변동지수(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반영
- 각종 공제·감면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영세율 및 수입에 대한 면제,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4) 2023년

- 맥주·탁주 주세율 변경
 - ▶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직전연도 세율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을 폐지하는 대신 기본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의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근거 마련
- 각종 공제·감면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라. 자산세제

자산세 분야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및 과세표준·세율을 조정하고, 기업승계세제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며,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혼인·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1) 2020년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 공평과세를 위해 현행 일반·성실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되어있던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요건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2) 2021년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세부담 완화
 -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과세표준 하향
-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범위 확대
 - ▶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3) 2022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및 과세표준·세율 조정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일반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하고, 과세표준 조정 및 적용 세율 인하
- 기업승계세제 적용대상·공제한도 확대 등
 - ▶ 기업상속공제 및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대상·공제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4) 2023년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 혼인 및 자녀 출생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 한도로 추가공제
- 기업승계세제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분석 및 시사점

태정림 ·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4835)

1. 논의 배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일정한 성장 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효율적인 자본시장 이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 법인화(business incorporation)의 일환에 해당함

- ▶ 우리나라 가동법인 수는 2000년 24만개에서 2022년에는 110만개로 2000년 대비 약 4.5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현상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개인과 법인 소득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여 세원을 이동하고, 적용되는 세율의 수준 등을 낮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와 법人间 조직형태 변경이 실시될 가능성도 존재

-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누진도가 강화되었고, 법인세는 국제적인 세율 인하 경쟁의 영향으로 최고세율 수준이 인하되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간 최고세율 차이가 중앙정부 세율 기준으로 2000년 12%p에서 2022년에는 21%p까지 확대된 상황

선행연구에서는 개인과 법인 소득간 세율 격차로 인해 세부담 차이가 확대될 경우 조직형태 전환을 통해 소득의 귀속주체를 변경할 유인이 존재함을 보고

- ▶ 해외 연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율 격차가 존재할 경우 귀속 주체를 변경하여 세원을 이동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1980년대 미국 소득세율이 법인세율 보다 낮아지자¹⁾ 법인에서 개인으로 세원이동이 발생(Gordon and Slemrod, 1998) 하였고, 전통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 법인세율 수준이 낮아지자²⁾ 개인에서 법인으로 세원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Alstadsaeter and Jacob, 2015)
- ▶ 국내 연구는 가용자료의 한계로 가상의 소득금액에 대해 개인과 법人间 세율 격차로 인한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세부담 수준이 조직전환의 주된 요인임을 제시
 - 전병목(2013)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를 토대로 개인사업자와 법人间 자산/소득이동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함

1) 1980년대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조치(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와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의 영향으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8%로 인하되었고 과세구간도 15%/28%로 단순화 되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4%로 인하되었고 최저한세가 강화되면서 개인소득으로 이전할 경제적 유인이 확대된 시기에 해당한다.
2) 스웨덴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2012년 56.6%에서 2013년 57%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은 같은 기간 26.3%에서 22%로 인하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간 격차가 확대된 바 있다.

본 고는 통계청의 기업 미시자료인 ‘기업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2010~2022년 국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율 격차가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

- ▶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에 사업신고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법인 등 기업체의 사업자등록 행정자료와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조사자료를 연계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모집단 자료에 해당함
 - 기존에는 국세청의 폐업신고 자료를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건수만 파악할 수 있고 그 외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종사자수, 업력, 소재지 등 특성 정보가 없어 실증분석이 불가능했음
- ▶ 본 고는 ‘기업통계등록부’에 축적된 2010~2022년 기간의 미시자료를 토대로 국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전환 결정시 세율 격차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2.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현황 및 특징

2024년 5월 말 기준, 기업통계등록부의 2010~2022년 자료에 수록된 전체 모집단은 1억 839만개(연평균 834만개)이며 이 중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9,596만개(연평균 739만개)로 전체 모집단의 88.5%를 차지

표 1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의 사업자 유형별 자료수

(단위: 만개, %)

사업자유형별		전체 (2010~2022년)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2년
전체		10,839 (100.0)	3,558 (100.0)	4,200 (100.0)	3,082 (100.0)
- 법인기업		1,243 (11.5)	358 (10.1)	493 (11.7)	391 (12.7)
- 개인사업자	10인이상 고용	242 (2.2)	104 (2.9)	82 (2.0)	56 (1.8)
	10인미만 고용 ¹⁾	9,354 (86.3)	3,096 (87.0)	3,624 (86.3)	2,634 (85.5)

주: 1. ()안은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비중

1) 기업통계등록부는 개인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별도로 분류

자료: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각 년도

2010년~2022년 기간에 실제 운영 중(최근 3년 매출액 및 소득 추정액 존재)인 개인사업자(5,851만개)³⁾ 중 법인전환을 실시한 사업체는 총 6.1만개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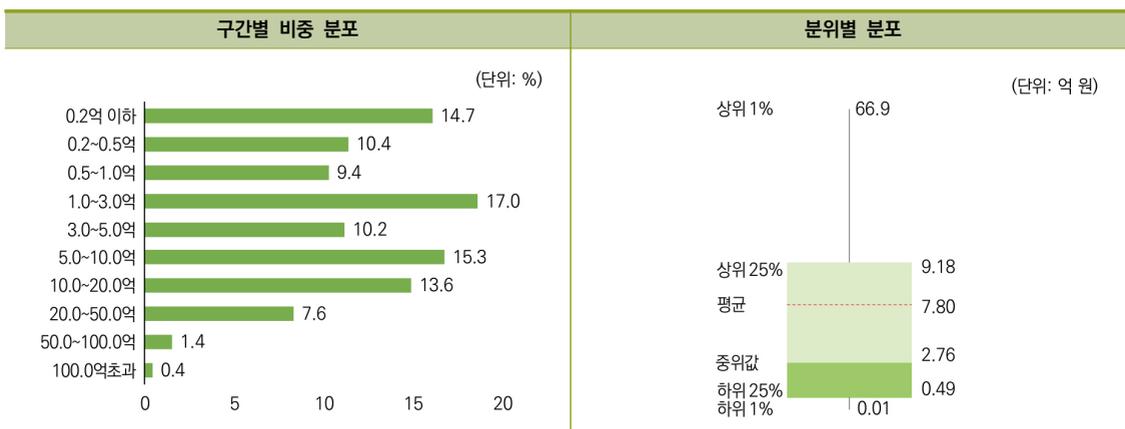
3)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을 표본에서 제외하기 위해 전체 개인사업체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소득 추정액이 발생한 사업자에 한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창업 3년 이하인 개인사업체의 경우 창업 이후 기간 중 평균 매출액과 소득 추정액이 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기업통계등록부’ 변수 중 폐업 사유 항목에 “법인전환”이나 “법인합병”이 표기된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 사례로 식별하여 해당 데이터를 추출함
 - 개인사업자 중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 6.1만개는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에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수인 약 6.6만개⁴⁾와 유사한 수준에 해당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7.8억원 수준, 평균 업력은 6.8년으로 조사됨

- ▶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7.8억원, 중위값은 2.8억원이며, 구간별로는 1~10억원 사이에 전체 사업자의 42.5%(2.6만명)가 분포
 -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 연평균 매출액의 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값 2.8억원을 중심으로 하위 25%는 0.5억원, 상위 25%는 9.2억원 수준

그림 1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 연평균 매출액의 구간별·분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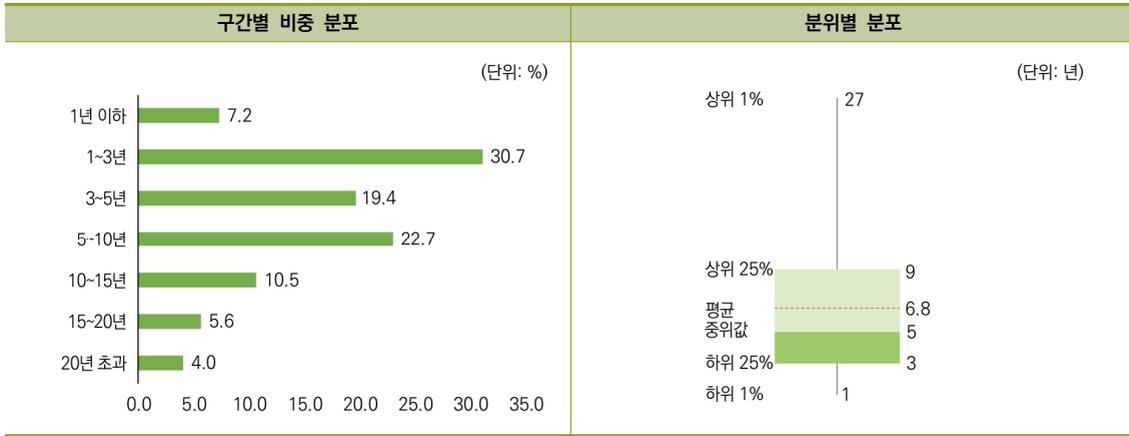


주: 분위별 분포의 상자그림의 극값은 최대값 및 최소값이 아닌 상·하위 1%를 나타내는 값임에 유의
 자료: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각 년도

- ▶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력은 평균 6.8년, 중위값은 5년이며, 구간별로는 1~10년 사이에 전체 사업자의 72.8%(4.43만명)가 분포
 -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 업력의 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값은 5년을 중심으로 하위 25%는 3년, 상위 25%는 9년 수준

4) 국세통계연보상 동 기간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자는 총 66,267명(일반사업자 56,337명, 간이사업자 3,486명, 면세사업자 6,444명)이다.

그림 2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 업력의 구간별·분위별 분포



주: 분위별 분포의 상자그림의 극값은 최대값 및 최소값이 아닌 상·하위 1%를 나타내는 값임에 유의
 자료: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각 년도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음식 및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감소하는 모습

-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추세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별 비중의 변화와도 유사한 흐름에 해당함
 - ※ 산업별 비중(10년 → '22년, %): (증가) 부동산업 3.7 → 9.7, 정보통신 4.8 → 7.5, 음식 및 숙박 3.0 → 9.3 (감소) 제조업 18.3 → 10.8, 도·소매 33.0 → 27.4
- ▶ 부동산업의 경우 2012년을 기점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급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발견됨
 -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⁵⁾와 같은 제도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
- ▶ 아울러 정보통신업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증가한 업종에 해당하며, 영상 제작 및 배급 산업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이에 수반하는 광고수익 규모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음

5)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2012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도입되었고 2014년에는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 2019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의무화되었다.

표 2 부동산업 및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추이

(단위: 명)

산업분류	2010(A)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B)	증감 (B-A)
부동산업	182	526	580	652	784	565	478	296
- 부동산임대업	133	435	476	541	647	416	343	210
정보통신업	233	256	298	346	328	371	371	138
- 소프트웨어 개발	112	122	122	131	142	143	153	53
- 영상콘텐츠 제작	31	26	37	51	40	65	81	68

자료: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각 년도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다음에서는 개인사업자 중 법인으로 전환한 그룹과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법인전환의 주된 요인인지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음

$$y_{it} = \alpha + \beta_1 TD_{it} + \beta_{21} \log(sales)_{it} + \beta_{22} \log(prof)_{it} + \Gamma X_{it} + \mu_i + \theta_t + e_{it}$$

- 종속변수 y_{it} 는 사업자 i가 연도 t에 기업을 전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전환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기
- 주요 설명변수인 TD_{it} 는 사업자 i의 연도 t의 소득 추정액($prof_{it}$)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의미
 - ※ 연도별·과세표준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는 [표 3]과 같음
- 또 다른 주요 설명변수인 $sales_{it}$ 는 사업자 i의 연도 t를 기준으로 이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을, $prof_{it}$ 는 당해연도 사업자의 소득 추정치를 의미
 - ※ 본 분석의 소득 추정치는 기업통계등록부의 매출액 자료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산출한 산업(대분류)별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을 반영하여 추정
- 그 외 기타 통제변수의 벡터인 X_{it} 에는 t년도 기준 업력, 지역, 산업, 기업규모, 대외교역 발생 여부 등의 자료를 포함함
 - ※ 산업변수는 각 산업(대분류)별로 사업자가 영위하는지 여부를 더미변수(영위=1, 영위하지 않음=0) 형태로 반영
 - ※ 대외교역 발생 여부는 수출 등의 무역활동 여부에 따라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표 3 2010~2022년간 연도별 ·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차이(지방소득세율 포함)

2010~2011년				2012~2013년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A)	법인세율(B)	차이(A-B)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A)	법인세율(B)	차이(A-B)
0.12억원 이하	6.6	11.0	△4.4	0.12억원 이하	6.6	11.0	△4.4
0.12~0.46억원	16.5	11.0	5.5	0.12~0.46억원	16.5	11.0	5.5
0.46~0.88억원	26.4	11.0	15.4	0.46~0.88억원	26.4	11.0	15.4
0.88~2억원	38.5	11.0	27.5	0.88~2억원	38.5	11.0	27.5
2억원 초과	38.5	24.2	14.3	2~3억원	38.5	22.0	16.5
				3~200억원	41.8	22.0	19.8
				200억원 초과	41.8	24.2	17.6
2014~2016년				2017년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A)	법인세율(B)	차이(A-B)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A)	법인세율(B)	차이(A-B)
0.12억원 이하	6.6	11.0	△4.4	0.12억원 이하	6.6	11.0	△4.4
0.12~0.46억원	16.5	11.0	5.5	0.12~0.46억원	16.5	11.0	5.5
0.46~0.88억원	26.4	11.0	15.4	0.46~0.88억원	26.4	11.0	15.4
0.88~1.5억원	38.5	11.0	27.5	0.88~1.5억원	38.5	11.0	27.5
1.5~2억원	41.8	11.0	30.8	1.5~2억원	41.8	11.0	30.8
2~200억원	41.8	22.0	19.8	2~5억원	41.8	22.0	19.8
200억원 초과	41.8	24.2	17.6	5~200억원	44.0	22.0	22.0
				200억원 초과	44.0	24.2	19.8
2018~2020년				2021~2022년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A)	법인세율(B)	차이(A-B)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A)	법인세율(B)	차이(A-B)
0.12억원 이하	6.6	11.0	△4.4	0.12억원 이하	6.6	11.0	△4.4
0.12~0.46억원	16.5	11.0	5.5	0.12~0.46억원	16.5	11.0	5.5
0.46~0.88억원	26.4	11.0	15.4	0.46~0.88억원	26.4	11.0	15.4
0.88~1.5억원	38.5	11.0	27.5	0.88~1.5억원	38.5	11.0	27.5
1.5~2억원	41.8	11.0	30.8	1.5~2억원	41.8	11.0	30.8
2~3억원	41.8	22.0	19.8	2~3억원	41.8	22.0	19.8
3~5억원	44.0	22.0	22.0	3~5억원	44.0	22.0	22.0
5~200억원	46.2	22.0	24.2	5~10억원	46.2	22.0	24.2
200~3,000억원	46.2	24.2	22.0	10~200억원	49.5	22.0	27.5
3,000억원 초과	46.2	27.5	18.7	200~3,000억원	49.5	24.2	25.3
				3,000억원 초과	49.5	27.5	22.0

주: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5.

표 4 실증분석 모형의 변수설명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 설명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유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y_{it})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여부 (전환=1, 전환하지 않음=0)	1	-	0	-	
주요 설명변수	세율격차(TD_{it})	사업자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	2.061	7.874	-2.854	3.727
	매출액($sales_{it}$)	이전 3년간 평균 매출액(억원)	7.801	21.267	1.626	105.521
	소득 추정치($prof_{it}$)	당해연도 사업자의 소득 추정치(백만원)	22.692	90.249	4.140	264.612
통제변수	업력(age_{it})	개인사업자의 창업 이후 기간(년)	6.754	5.923	8.250	7.401
	지역($region_{it}$)	기업의 수도권 위치 여부(수도권=1, 비수도권=0)	0.628	0.483	0.512	0.500
	기업규모($size_{it}$)	기업규모의 중소기업 여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1, 10인 미만=0)	0.025	0.156	0.023	0.151
	대외교역($exim_{it}$)	기업의 대외교역 여부 (수출액 및 수입액이 발생=1, 발생하지 않음=0)	0.008	0.091	0.003	0.056

자료: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가 증가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며, 매출액 및 소득 증가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가 증가할 경우 법인전환 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
 - 세율 격차는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로 구분한 모든 하위 표본에서 코로나19 발생 전·후와 무관하게 법인전환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및 소득이 증가할수록, 법인전환 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
 - 단,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우 매출액 및 소득의 변동이 심했고, 기업의 존속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액 및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전환 확률의 방향이 음(-)으로 변경됨

표 5 실증분석 결과

변수명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	
	(1) 제조업	(2) 비제조업	(3) 수도권	(4) 비수도권	(5) 코로나19 이전 (2010~2019년)	(6) 코로나19 발생 (2020~2022년)
TD_{it}	0.004*** (26.46)	0.0002*** (43.84)	0.0003*** (43.78)	0.0002*** (28.26)	0.0003*** (29.47)	0.00004*** (5.99)
$\log(prof)_{it}$	0.001*** (12.49)	0.0001*** (16.87)	0.0001*** (14.89)	0.0001*** (11.21)	0.0001*** (9.56)	-0.00002** (2.09)
age_{it}	0.002*** (3.12)	0.001*** (7.23)	0.001*** (5.90)	0.001*** (5.37)	0.001*** (8.08)	0.0001** (2.56)
$region_{it}$	-0.002*** (2.88)	0.0004** (2.19)	-	-	-0.0001 (0.38)	0.0004 (1.29)
$size_{it}$	-0.029*** (53.26)	-0.011*** (73.98)	-0.015*** (71.11)	-0.013*** (58.60)	-0.017*** (85.90)	-0.009*** (26.25)
$exim_{it}$	0.001*** (4.25)	0.001*** (10.03)	0.001*** (8.54)	0.001*** (6.25)	-	0.001*** (10.92)
기업수(i) 및 개체수(n)	i=87.2만개 n=492.1만개	i=1,278.7만개 n=5,358.7만개	i=705.4만개 n=3,012.8만개	i=650.9만개 n=2,838.0만개	i=1,045.7만개 n=4,017.8만개	i=814.1만개 n=1,833.0만개

주: 1. ()안은 t값으로,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개체(μ_i), 시간(θ_t)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로 분석한 값임
 3. 본 분석은 주요 설명변수로 세율격차와 소득 추정치를 사용한 모형의 결과 값으로, 소득 추정치 대신 매출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 도출
 자료: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다만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세율 격차와 매출액 또는 소득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해석상 유의사항이 존재함

- ▶ 본 고의 실증분석은 종속변수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여부를 1과 0으로 표시하는 더미변수로 설정함에 따라, 주요 설명변수가 갖는 한계적 효과를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널 로짓모형과 같은 비선형 모형을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 현재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국세청 과세자료(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액)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기업통계등록부를 이용할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 외에 국세청 과세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 ※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기업통계등록부가 제공하는 매출액을 토대로 소득액을 추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실제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 후 성장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업 규모화(scale up⁶)의 일종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와 과세표준 양성화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음.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취득세 경감 등 조세지원도 제공되고 있음

-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기업 성장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법인전환 후 재무제표 공시 등에 따른 회계 투명성 증대,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조세지원을 제공 중임

한편 국내외 선행연구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있어 세율 격차 및 세부담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소득-법인소득간 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인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 다만 국내 선행연구는 가용자료의 한계로 가상의 소득을 상정한 후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세부담이 법인전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설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은 제한적인 상황

본고는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현황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2010~2022년간 6.1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 따르면 세율격차 및 소득액 확대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법인전환을 선택한 개인사업자는 전환 이전 연평균 매출액이 7.8억원 수준이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평균 6.8년이었음
-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격차, 소득액 모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보임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등을 더욱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별 소득 등 과세자료를 연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다만 현재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과세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 명부와 매출액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어, 통계청과 국세청간 업무협의를 통해 보다 완성된 수준의 자료구축 및 공개를 실시할 필요

6) 기업의 규모화(scale up)는 창업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 또는 고용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매출 또는 고용이 3년 평균 15~20% 이상 성장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화(scale up)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세율 격차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수준 결정시 양자의 관계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정책설계가 뒷받침될 필요

-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율 차이를 감안한 귀속주체의 변경에 그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유형의 변경, 소득의 귀속시점 변경 등 다양한 유형의 조세전략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간 상호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심한 정책설계를 고민할 필요
- ▶ 한편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시 업무용 차량 등 법인 업무용 자산의 사적 이용 등 업무무관 비용을 통한 간주 급여(fringe benefits) 활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추계

이 주 호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46)

1. 들어가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22년~)을 2024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25년부터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

- (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지원
- 동 사업은 2022~2023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 본사업(전국 3만명)으로 전환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확대·추진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의 재정소요가 증가할 예정

이 글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본사업 전환 후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적정 예산 반영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검진율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추계함으로써 이에 따른 재정소요의 범위를 제시함

2.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현황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¹⁾에 따르면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²⁾은 여성농업인 6.3%, 남성농업인 4.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³⁾

- 전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1일 이상 휴업)은 2018년 4.8%, 2020년 5.0%, 2022년 5.3%로 증가 추세
 - ▶ 조사년도(2018~2022년) 중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남성농업인보다 높게 나타남
 - ▶ 2022년 조사 기준, 50세 미만은 1.2%, 50~59세는 3.3%, 60~69세는 5.0%, 70세 이상 7.9%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1) 2021.1.1.~12.31.까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파악

2)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 = (휴업 1일 이상 업무상 질병자 수 / 농업인 수) × 100

3)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농업인 업무상 질병, '여성' 많고 대부분 '근골격계질환'—농촌진흥청,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발표," 2023.4.25.

표 1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성별 및 연령별): 2018~2022년

(단위: 명, %)

조사년도 성별 · 연령별		2018			2020			2022		
		농업인 수	업무상 질병자수	업무상 질병 유병률	농업인 수	업무상 질병자수	업무상 질병 유병률	농업인 수	업무상 질병자수	업무상 질병 유병률
총계		1,862,682	88,696	4.8	1,766,219	88,138	5.0	1,859,612	99,458	5.3
성별	남자	953,210	37,991	4.0	970,672	41,961	4.3	962,527	42,944	4.5
	여자	909,472	50,706	5.6	795,547	46,177	5.8	897,085	56,514	6.3
연령별	50세 미만	223,413	2,171	1.0	170,886	2,386	1.4	189,159	2,217	1.2
	50~59세	409,166	10,804	2.6	340,298	9,144	2.7	352,128	11,629	3.3
	60~69세	579,253	29,330	5.1	576,660	28,495	4.9	646,841	32,615	5.0
	70세 이상	650,850	46,391	7.1	678,375	48,113	7.1	671,483	52,998	7.9

주: 1.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 = (휴업 1일 이상 업무상 질병자 수 / 농업인 수) × 100
 2. 농업인 수 및 업무상 질병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을 대표하는 규모로 추정된 수치
 자료: 농촌진흥청, 「2022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2023를 바탕으로 재구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3&tblId=DT_14303_E1302&conn_path=I3)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종류별 분포 유형은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높고,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질병 종류별 분포 유형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환(96.5%), 순환기계질환(1.0%), 피부질환(0.6%), 온열질환(0.5%), 신경계질환(0.4%) 순으로 조사됨
- 전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1일 이상 휴업) 중 근골격계질환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 6.2%, 남성 4.3%로, 여성이 남성보다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됨⁴⁾

표 2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의 종류별 분포(유병률, 성별): 2022년 조사결과

(단위: 명, %)

업무상 질병 종류	전체			남성			여성		
	추정 질병자수	유병률	백분율 (빈도)	추정 질병자수	유병률	백분율 (빈도)	추정 질병자수	유병률	백분율 (빈도)
근골격계질환	97,215	5.2	96.5	41,760	4.3	95.3	55,455	6.2	97.4
순환기계질환	1,013	0.1	1.0	828	0.1	1.9	185	0.0	0.3
피부질환	561	0.0	0.6	244	0.0	0.6	316	0.0	0.6
온열질환	539	0.0	0.5	441	0.0	1.0	98	0.0	0.2
신경계질환	389	0.0	0.4	212	0.0	0.5	177	0.0	0.3
감염성질환	381	0.0	0.4	49	0.0	0.1	332	0.0	0.6

4)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농업인 업무상 질병, ‘여성’ 많고 대부분 ‘근골격계질환’—농촌진흥청,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발표,” 2023.4.25.

업무상 질병 종류	전체			남성			여성		
	추정 질병자수	유병률	백분율 (빈도)	추정 질병자수	유병률	백분율 (빈도)	추정 질병자수	유병률	백분율 (빈도)
중앙성질환	277	0.0	0.3	227	0.0	0.5	49	0.0	0.1
호흡기계질환	128	0.0	0.1	49	0.0	0.1	79	0.0	0.1
간질환질환	97	0.0	0.1	—	0.0	0.0	97	0.0	0.2
눈질환	85	0.0	0.1	—	0.0	0.0	85	0.0	0.1
귀질환	70	0.0	0.1	—	0.0	0.0	70	0.0	0.1

주: 1. 중복응답이 존재하므로 총계를 제시하지 않음

2. 질병 종류별 농업인(전체/남성/여성)의 업무상 질병 분포율 = $\frac{\text{질병 종류별 휴업 1일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전체/남성/여성)}}{\text{업무상 질병자수(전체/남성/여성)}} \times 100$

3. 질병 종류별 농업인(전체/남성/여성)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 = $\frac{\text{질병 종류별 휴업 1일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전체/남성/여성)}}{\text{농업인 수(전체/남성/여성)}} \times 100$

4. 업무상 질병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을 대표하는 규모로 추정된 수치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2022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통계표)에서 발췌 정리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및 관련 입법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중

- 2022~2023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
 - ▶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⁵⁾
 - 단, 54세 및 66세 연령 해당자는 골밀도검사 제외
(국가건강검진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해당 연령자에 대해 골밀도검사 실시)
 - ▶ 대상자 및 참여 지자체 수: ('22년) 9천명, 11개 시·군 → ('23년) 9천명 18개 시군
→ ('24년) 3만명, 전국 50개 시군
 - ▶ 예산: ('22~'23년) 각 19억 9,000만원 → ('24년) 43억원 (국비 기준)
 - ▶ 검진주기: 2년(홀짝수년 출생자 대상)
 - ▶ 주요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 지원
 - 검진 항목(5영역 10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 질환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표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현황: 2022~2024년 및 2025년 이후

(단위: 백만원, 명)

	시범사업		본사업		
	2022	2023	2024		2025년 이후
예산(안)	1,990	1,990	4,300	→	매년 18,610
대상자 (51~70세 여성농업인)	9,000	9,000	30,000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 으로 대상자 확대 예정 (약 15.1만명)
대상 지자체 수	11개 시·군	18개 시·군	50개 시·군		전국
분담률	국비 90%, 자부담 1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주: 국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18	국정과제(81-2번)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 반영
2019	「여성농업인 육성법」(‘18. 12월) 및 시행령(‘19. 6월) 개정
2020	「제4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 반영 예비검진 효과 분석(‘19~’20, 1천명) 및 사회보장선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022~202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
2023. 8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 - 면제사유: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202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실시 (전국 확대) -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 대상
2025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확대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및 「202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매뉴얼」을 바탕으로 정리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23.8.)⁶⁾됨에 따라 2024년 본사업 전환 이후 2025년부터 대상자를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할 계획⁷⁾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법령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시 산출한 총사업비는 1,154억원 규모(‘23~’27년)
 -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세 내역은 ‘[참고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적 및 총사업비 세부내역’ 참고

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2023.8.31.
 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2024.1.15.
 8)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 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총사업비 규모: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간 총사업비	2,178	7,600	35,220	35,220	35,220	115,438

주: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 금액 합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제21대국회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농해수위)에 계류중이었으나, 제21대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됨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260호, 2023.9.6.)
 -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비용추계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수 추이(2018~2023년) 및 장래인구추계 결과, 검진율,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등을 사용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및 재정소요(국비 및 지방비)를 시나리오별로 추계

$$\text{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총사업비} = \sum_{i=2025}^{2029} (\text{검진비} + \text{검진관리비(행정비용)})_i$$

- (추계기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 ▶ 본사업 전환 후 2025년부터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설정
- (검진비 단가) 여성농업인 1인당 검진비 단가는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2024년 기준)
 - ▶ 51~70세: 22만원 (54세 및 66세 제외)
 - ▶ 54세 및 66세: 17만 5천원 (골밀도검사 제외 비용)
 - 국가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검사 수검 (중복)

9) 2024.5.29. 임기만으로 폐기

▶ 이때, 검진비 단가에 최근 3년(2022~2024년)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평균값 2.02% 적용¹⁰⁾

-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22년) 2.09%, ('23년) 1.98%, ('24년) 1.98%

표 6 1인당 특수건강검진비 단가 추정: 2024~2029년

(단위: 천원/명)

해당 연령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51세~70세 (단, 54세 및 66세 제외)	220	224	229	234	238	243
54세 및 66세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175	179	182	186	190	193

주: 특수건강검진비 단가에 최근 3년(2022~2024년)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평균값 2.02%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작성

● (검진대상자 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12. 공표)에서 추계된 연도별 여성인구 수(중위 추계) 및 농업경영체 여성농업인 등록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 최근 5년(2019~2023년)간 우리나라 전체 여성인구 대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연평균 비율 계산

- 51~70세: 2.17% (단, 54세 및 66세 제외)

- 54세 및 66세: 0.23%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 이때,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여성인구 대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 중 특수 건강검진대상자)의 비율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수 추계

표 7 우리나라 전체 여성인구 대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우리나라 전체 여성인구(A)		25,816,116	25,910,542	25,898,598	25,853,883	25,852,731	25,866,374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 업인 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51~70세(B) (54세 및 66세 제외)	557,144	557,946	558,120	572,306	562,235	561,550
	전체 여성인구 대비 비율 (C=B/A)	2.16	2.15	2.16	2.21	2.17	2.17
	54세 및 66세(D)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54,080	55,652	61,605	59,781	60,825	58,389
	전체 여성인구 대비 비율 (E=D/A)	0.21	0.21	0.24	0.23	0.24	0.23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2019~2023년 (각 연도 말 기준)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공표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작성기준일: 2023.6.30.)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413m01.do>>

표 8 특수건강검진 대상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

			2025	2026	2027	2028	2029
우리나라 전체 여성 인구(A)			25,846,661	25,814,069	25,781,367	25,748,028	25,713,793
특수건강검진 대상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 수	51세~70세 (54세 및 66세 제외)	비율(B)	2.17	2.17	2.17	2.17	2.17
		소계 (C=A×B)	561,122	560,415	559,705	558,981	558,238
	54세 및 66세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비율(D)	0.23	0.23	0.23	0.23	0.23
		소계 (E=A×D)	58,344	58,271	58,197	58,121	58,044
	합계(F=C+E)			619,466	618,685	617,901	617,102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2019~2023년 (각 연도 말 기준)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공표

- (시나리오별 검진율) 다음 시나리오에 따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을 구분하여 추계

표 9 시나리오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

구분	검진율	비고
시나리오 1	50.0%	정부안과 동일 (2023~2027년 총사업비 산출시 사용한 검진율)
시나리오 2	63.4%	과거 3년(2017~2019년)간 여성농업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시나리오 3	73.6%	최근 3년(2022~2024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 고태화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질병 유병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23.11.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추이,” 2023.12.31. 기준

▶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인 경우

- 정부안과 동일하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시 산출한 총사업비 산출내역에서 2025~2027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을 50%로 가정한 것을 준용한 것임¹¹⁾

▶ (시나리오 2) 검진율 63.4%인 경우

- 과거 3년(2017~2019년) 여성농업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¹²⁾

- 여성농업인 일반검진수검률: (‘17년) 64.1%, (‘18년) 64.9%, (‘19년) 61.2%¹³⁾

11) [참고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적 및 총사업비 세부내역 참고

12) 고태화 외(2023.11)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인 및 일반인구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교함.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일차건강검진을 시행한 대상자의 비율로써 계산함. 농업인 건강검진의 경우 2015년도부터 2020년도의 농업인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수검률을 확인함

(자료: 고태화, 임지혜, 최동필, 김경란, 김경수, 이민지, 강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질병 유병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vol. 48 iss. 4,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23.11. 349~355쪽)

표 10 농업인 및 일반인구의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2015~2020년
(Health examination participation rates from 2015 to 2020 in farmers and non-farmers)

(단위: %)

연도 (Year)	전체 (Total)		남성 (Men)		여성 (Women)	
	일반인구 (Non-farmer)	농업인 (Farmer)	일반인구 (Non-farmer)	농업인 (Farmer)	일반인구 (Non-farmer)	농업인 (Farmer)
2015	73.4	60.6	74.2	59.4	72.6	62.8
2016	75.4	61.6	76.0	60.8	74.8	63.0
2017	76.2	62.9	77.0	62.3	75.4	64.1
2018	75.2	64.2	76.1	63.8	74.4	64.9
2019	76.2	60.1	77.1	59.6	75.3	61.2
2020	69.5	52.1	70.6	51.8	68.4	52.7

주: 아래 인용 자료에서 "농업인과 일반인구에서 모두 2020년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와 같이 밝히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2]에서 2020년 여성농업인 검진율은 평균 산출시 제외함
 자료: 고태화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질병 유병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23. 11., 353쪽

▶ (시나리오 3) 검진율 73.6%인 경우

- 최근 3년(2021~2023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 일반검진 수검률: ('21년) 74.2%, ('22년) 75.4% ('23년) 71.1%¹⁴⁾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¹⁵⁾하도록 한 것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것임

표 11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2019~2023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검진 수검률	74.1	67.8	74.2	75.4	71.1

자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추이," 2023.12.31. 기준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407m01.do>>

● (검진비 부담률 및 검진관리비)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은 2024년 기준 부담률 적용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0% : 40% : 10%

- 단, 검진관리비(행정비용)¹⁶⁾는 현행과 같이 국비 100%로 가정하고, 정부안을 준용하여 매년 20억원이 추계기간 동안 변동없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13) 앞의 인용 논문(고태화 외, 2023)에서 "농업인과 일반인구에서 모두 2020년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와 같이 밝히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2]에서 2020년 여성농업인 검진율은 평균 산출시 제외함

1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추이," 2023.12.31. 기준.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407m01.do>>

1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2023.1.15.

16) 2024년 검진관리기관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다. 추계결과

추계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총사업비는 검진율 시나리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인 경우, 총사업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869억 9,400만원 (연평균 373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984억 9,700만원(연평균 196억 9,900만원)
 - (지방비) 707억 9,700만원(연평균 141억 5,900만원)
- (시나리오 2) 검진율 63.4%인 경우, 총사업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344억 2,800만원 (연평균 468억 8,6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1,222억 1,400만원(연평균 244억 4,300만원)
 - (지방비) 897억 7,100만원(연평균 179억 5,400만원)
- (시나리오 3) 검진율 73.6%인 경우, 총사업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704억 1,700만원 (연평균 540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1,402억 800만원(연평균 280억 4,200만원)
 - (지방비) 1,041억 6,700만원(연평균 208억 3,300만원)

그림 1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 수 및 총사업비 추계: 2025~20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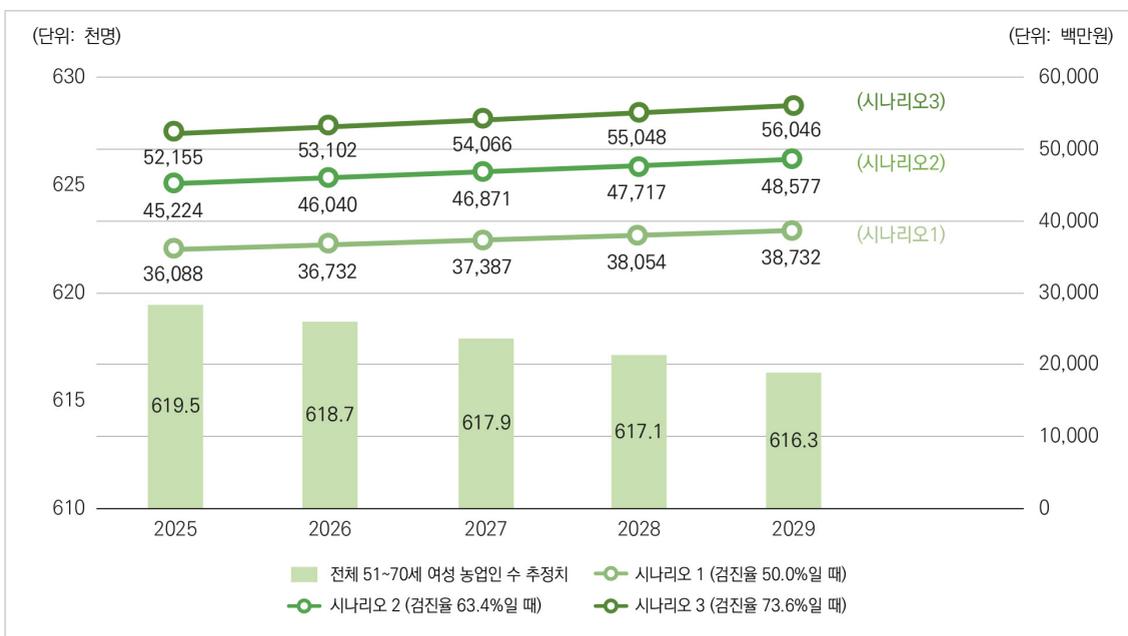


표 1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총사업비 추계: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공통변수	51~70세 여성농업인 수 (A, 명)	51세~70세 (54세 및 66세 제외) 58,344	560,415	559,705	558,981	558,238	—	—
	검진 주기(격년제) (B, %)	50%	50%	50%	50%	50%	—	—
	검진비 단가 (C, 천원/명)	51세~70세 (54세 및 66세 제외) 224	229	234	238	243	—	—
	54세 및 66세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179	182	186	190	193	—	—	
검진관리비(행정비용) (D, 국비 1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2,000	
검진율(D, %)	50.0%	50.0%	50.0%	50.0%	50.0%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일 때)	검진비 (E=A×B×C×D, 백만원)	51세~70세 (54세 및 66세 제외) 2,604	31,484	32,079	32,684	33,300	163,473	32,695
	54세 및 66세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2,604	2,653	2,703	2,754	2,806	13,521	2,704	
	소계	34,088	34,732	35,387	36,054	36,732	176,994	35,399
	총사업비 (F=D+E, 백만원)	36,088	36,732	37,387	38,054	38,732	186,994	37,399
	국비(D+E1, 백만원)	19,044	19,366	19,694	20,027	20,366	98,497	19,699
지방비(E2, 백만원)	13,635	13,893	14,155	14,422	14,693	70,797	14,159	
자부담(E3, 백만원)	3,409	3,473	3,539	3,605	3,673	17,699	3,540	
검진율(G, %)	63.4%	63.4%	63.4%	63.4%	63.4%			
시나리오 2 (검진율 63.4%일 때)	검진비 (H=A×B×C×G, 백만원)	51세~70세 (54세 및 66세 제외) 3,302	39,922	40,676	41,443	42,224	207,284	41,457
	54세 및 66세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3,302	3,364	3,428	3,492	3,558	17,144	3,429	
	소계	43,224	44,040	44,871	45,717	46,577	224,428	44,886
	총사업비(I=D+H, 백만원)	45,224	46,040	46,871	47,717	48,577	234,428	46,886
	국비(D+H1, 백만원)	23,612	24,020	24,436	24,858	25,288	122,214	24,443
지방비(H2, 백만원)	17,290	17,616	17,948	18,287	18,631	89,771	17,954	
자부담(H3, 백만원)	4,322	4,404	4,487	4,572	4,658	22,443	4,489	
검진율(J, %)	73.6%	73.6%	73.6%	73.6%	73.6%			
시나리오 3 (검진율 73.6%일 때)	검진비 (K=A×B×C×J, 백만원)	51세~70세 (54세 및 66세 제외) 3,831	46,324	47,198	48,089	48,995	240,523	48,105
	54세 및 66세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 3,831	3,904	3,977	4,052	4,129	19,894	3,979	
	소계	50,155	51,102	52,066	53,048	54,046	260,417	52,083
	총사업비(L=D+K, 백만원)	52,155	53,102	54,066	55,048	56,046	270,417	54,083
	국비(K1+J, 백만원)	27,078	27,551	28,033	28,524	29,023	140,208	28,042
지방비(K2, 백만원)	20,062	20,441	20,827	21,219	21,618	104,167	20,833	
자부담(K3, 백만원)	5,016	5,110	5,207	5,305	5,405	26,042	5,208	

주: 1.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인 경우 (정부안과 동일하게 적용)
 (시나리오 2) 검진율 63.4%인 경우 (과거 3년(17~19년)간 여성농업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시나리오 3) 검진율 73.6%인 경우 (최근 3년(21~23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2. 검진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평균값 2.02%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나가며

본사업 전환 이후 대상자 수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성(또는 경직성) 예산 증액이 예상되므로 주요 변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안 반영 필요

- 검진율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 수, 검진비 단가, 실제 검진율 등 주요 변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계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 필요

- 동 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업인에 대해 ‘일반건강검진’과 구별되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¹⁷⁾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홍보 등 강화 필요

- 동 사업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입법 목적¹⁸⁾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
 - ▶ 과거 여성농업인의 일반건강검진 검진율이 일반인에 비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을 일반인 일반건강검진 검진율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¹⁹⁾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260호, 2023.9.6.발의, 2024.5.29. 임기만료 폐기)

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예를 들어, 수검자(여성농업인) 편의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시 특수건강검진을 병행하여 수검 가능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취약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이동검진형(검진버스)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적 및 총사업비 세부내역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목표인원	총 수검인원	총 수검인원 중 골밀도 검사 제외 인원			예산	결산 (실집행액)
			소계	54세	66세		
2022	9,000	7,458	667	213	454	1,990	1,990 (1,689)
2023	9,000	8,381	756	158	598	1,990	1,990 (1,8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총사업비 세부내역(정부안): 2023~2027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검진 대상(명)	만 51~70세 여성농업인 수	605,000	605,000	605,000	605,000	605,000	-
검진 인원(명)	(농업 경영 체 DB 활용)	9,000	30,000	151,000 ¹⁾	151,000 ¹⁾	151,000 ¹⁾	-
검진단가(원)		21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
연간 검진비용 (백만원)	총액(A)	1,878	6,600	33,220	33,220	33,220	108,138
	- 국비	1,690 ²⁾	3,300	16,610	16,610	16,610	54,820
	- 지자체	-	2,640	13,288	13,288	13,288	42,504
	- 민간 자부담	188 ²⁾	660	3,322	3,322	3,322	10,815
검진관리기관 운영비(B) ³⁾ (백만원)		300	1,000	2,000	2,000	2,000	7,300
연간 총사업비(C=A+B) (백만원)		2,178	7,600	35,220	35,220	35,220	115,438

주: 1) 2025~2027년 검진인원 ≈ 전체 51~70세 여성농업인 수 × 검진주기(2년, 홀짝수년도 출생자) × 수검률
 ≈ 605,000명 × 50% × 50%
 ≈ 151,000명

2) 2023년도 국비/지자체/민간 부담분의 경우 국비 90%로 제시됨

3) 검진관리기관 운영비는 국비 지원으로 제시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정추계&세제 이슈

한눈에 보는 조세 · 재정지표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재정총량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1~3월
총수입(A)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573.9	612.2	147.5
국세수입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67.3	84.9
세외수입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30.8	28.5	28.2	7.5
기금수입	126.2	130.2	135.6	139.5	145.1	154.0	166.2	195.8	190.8	201.1	216.7	55.1
세입세출외	0.1	0.1	0.1	0.1	0.6	0.4	0.1	0.1	0.3	0.3	—	0.0
총지출(B)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56.6	212.2
예산	243.7	256.8	264.7	275.2	293.7	329.0	374.4	398.9	439.6	413.1	438.3	149.2
기금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9.6	231.2	196.5	218.4	63.0
세입세출외	0.2	0.2	0.3	4.0	6.6	11.2	0.4	2.6	11.6	1.0	—	0.0
통합재정수지(A-B)	8.5	-0.2	16.9	24.0	31.2	-12.0	-71.2	-30.4	-64.6	-36.8	-44.4	-64.7
관리재정수지	-29.5	-38.0	-22.7	-18.5	-10.6	-54.4	-112.0	-90.5	-117.0	-87.0	-91.6	-75.3
국가채무(중앙정부)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3.4	1,092.5	1,163.0	1,115.5
(구계열 GDP 대비, %)	(32.2)	(33.6)	(34.0)	(34.2)	(34.3)	(36.3)	(42.2)	(45.1)	(47.8)	(48.9)	(49.6)	—
(신계열 GDP 대비, %)	(30.7)	(32.0)	(32.3)	(32.4)	(32.5)	(34.3)	(39.8)	(42.3)	(44.5)	(45.5)	—	—

주: 1. 2023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4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4년 1~3월은 실적 기준임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함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4. 중앙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변경 전후(구계열 2015년 기준 → 신계열 2020년 기준)를 모두 표시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5월호 및 6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분야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16개 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4	22.7	24.4
과학기술	6.0	6.5	6.7	7.0	7.0	7.3	8.1	8.9	9.5	9.8	9.3
교육	50.5	52.5	55.4	59.2	64.3	70.5	70.9	77.4	95.0	85.6	89.8
교통 및 물류	18.0	20.9	19.1	18.5	15.3	16.3	18.3	21.1	21.7	19.5	22.1
국방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0.4	54.1	57.4
국토 및 지역개발	4.4	4.5	4.0	3.5	3.7	4.4	4.8	5.1	5.1	4.0	4.4
농림수산	17.0	19.1	18.7	19.4	19.6	20.4	21.7	22.9	23.2	24.0	25.4
문화 및 관광	5.2	6.2	6.7	6.9	6.3	7.2	8.1	8.5	9.0	8.4	8.7
보건	9.2	11.2	10.5	10.3	10.7	11.9	17.4	26.5	32.8	20.6	18.8
사회복지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5.1	204.8	22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4	17.8	18.5	19.0	18.8	20.6	37.2	46.2	73.7	26.5	28.0
예비비	0.4	0.5	0.5	0.6	0.6	0.6	0.6	0.6	0.6	0.6	4.2
일반·지방행정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108.1	103.5	110.5
통신	6.8	6.4	6.2	6.2	6.2	7.0	8.0	8.2	8.7	9.3	9.4
통일·외교	2.9	3.1	3.8	3.3	3.7	3.9	3.7	4.2	4.5	5.0	7.5
환경	6.1	6.7	6.9	7.1	7.0	8.5	9.3	10.2	11.0	11.3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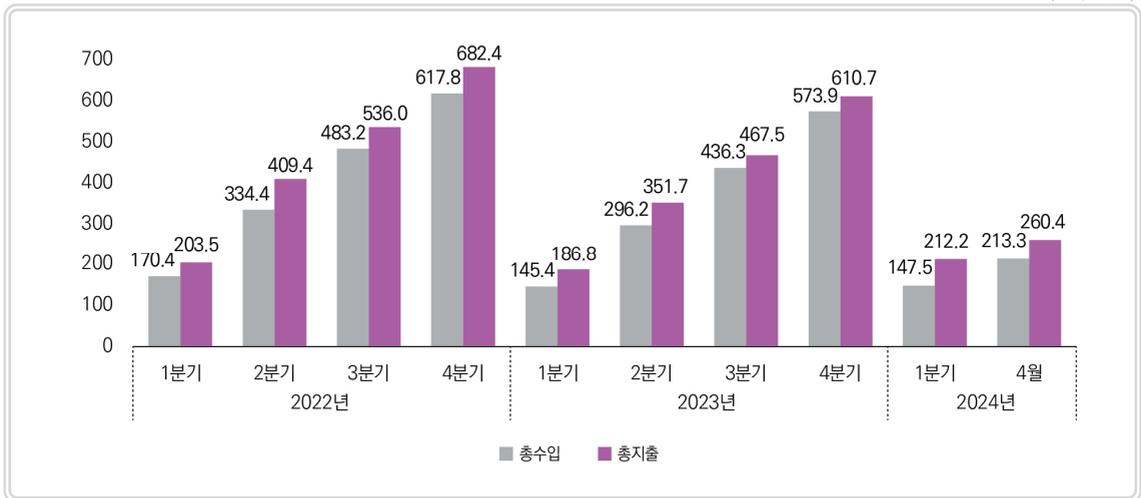
주: 1. 2023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4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 총지출 중 세입세출외는 제외함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총수입·총지출(분기별·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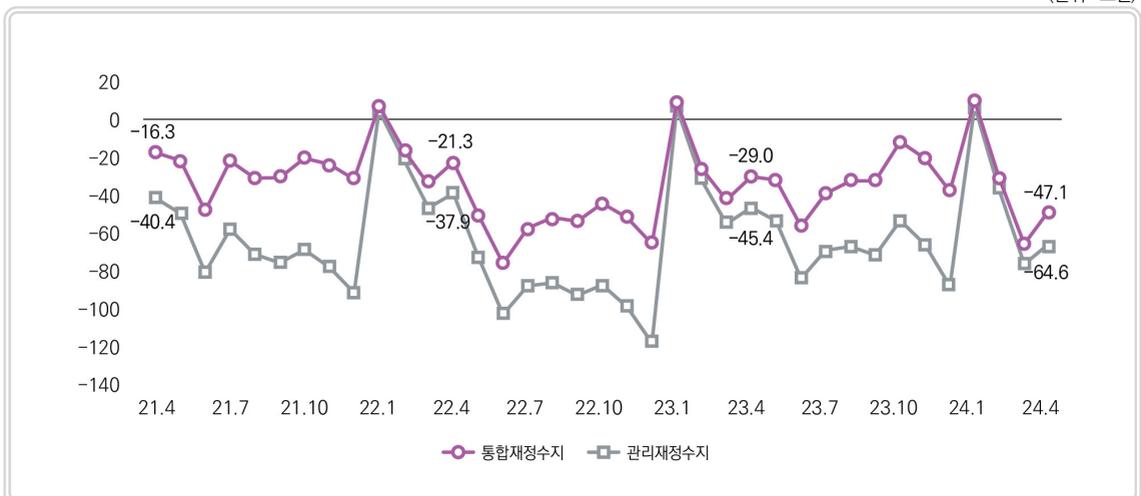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수지(월별 누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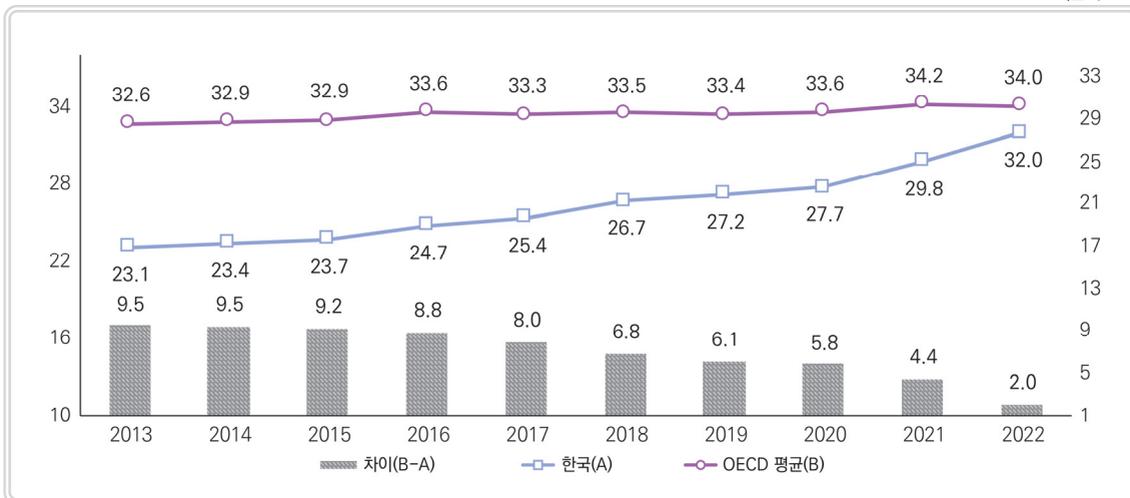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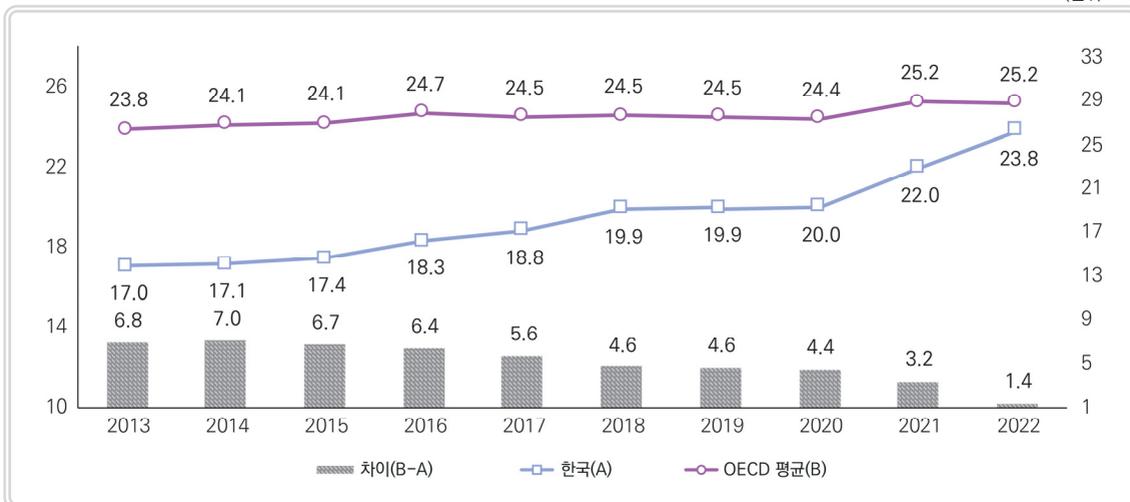
(단위: %)



주: 1) 국민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합액의 비율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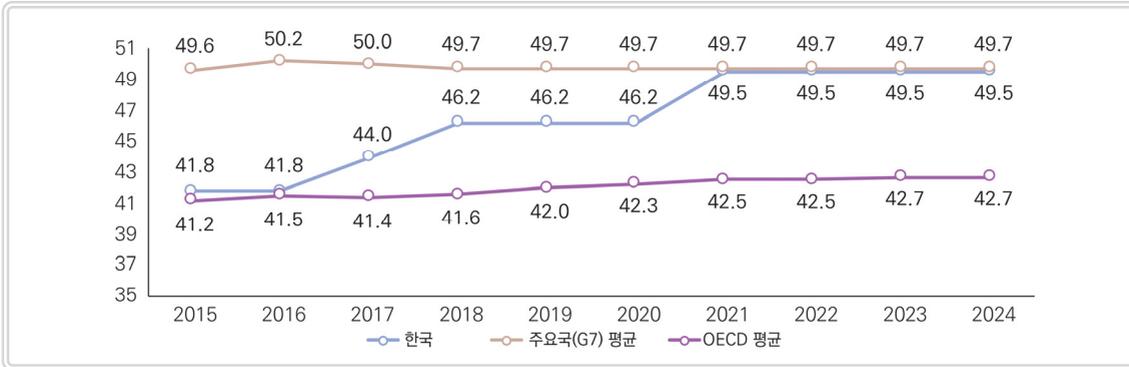


주: 1) 조세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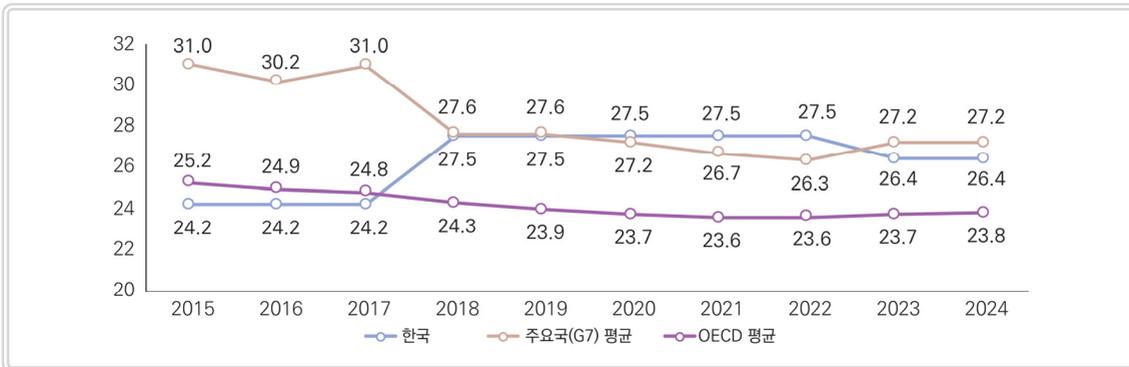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부가가치세율(지방세 포함, 표준세율 기준)

(단위: %)



주: 1) 각 세율의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
 2)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최고명목세율 기준이며, 지방세(지방소득세) 포함
 3)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미국의 판매세는 제외)이며, 지방세(지방소비세)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및 IBF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nabO Fiscal Estimates & Tax Issues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행일 2024년 6월 28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02-859-2278)

ISSN 2799-9408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 국회예산정책처, 2024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ISSN 2799-9408



국회에산정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